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9

저/역/자/외/투/역/스/연/업/외

1993년 9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83호 발행인 최현숙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9



<우리네 아이들>

이제 우리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미래이다.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저/역/사/외/역/자/△/연/접/외

1995년 9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33호 발행인 최현숙

어린이

일하며 생각하며 / 3

산다는 것은.....

정희연

연장취재 / 5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편집부

견습업소 / 7

구립 어린이집운영 개선대책

서울특별시

지상강연 / 12

지방자치와 보육사업

최현숙

지상강연 / 22

서울시 보육사업에 관한 제안서

서울시 민보련

새날을 열어가는 사람들 / 27

전혀 생각없는 아이로 취급하진 마세요

주혜민

책속의 책 / 32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기획 / 55

어린이집 가을철 식단

오경민



<표지사진>

홍원연수원에서 만난 아이들. 엄마 따라 보육교사 연수를 온 이 아이들은 사진에 찍힐 때마다 갖은 포즈를 취하였다. 난 그래서 이 귀염이들을 '황소', '황소형아', '뽀뽀'라고 불렀다.

좋은 그림책 소개 / 57

저택엔 식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이야기, 사랑의 고백 / 59

변미양

그후 네번째 여름

작은 기획 / 61

김태일

쉽게 배우는 사진, 비디오 교실

글마당 / 63

[햇살어린이집]편

탁아소별곡

김향진, 배미정, 김은정

우리들의 목소리

건강하게 삽시다 / 69

김철환

이와 잇몸의 병을 예방하려면

탁아계몽 / 70

소식과 소식 / 76

벼룩시장 / 78

편집부에서 / 79

■ 일하며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정희연 / 본회 부회장
아이사랑어린이집

나머지 나의 인생을 어찌 멋지게(?) 보낼까?
요즘 들어 부쩍 많이 하는 생각이다. 나이를 먹어 간다는 징표일까?
한때 해마다 나이를 한살씩 먹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 혹은 싫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제 서른도 중반에 접어 그런 생각이 조금 덜해졌고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까 하는 철든(?) 고민을 하게 된다. 여지껏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어지는 그런 시점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 중간중간에 예전 일을 많이 떠올리기도 한다. 소위 '그때가 좋았지' 류의 (이것도 역시 나이 들어가는 현상 중의 하나겠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의 일들, 열정, 헌신, 약간의 치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 용기와 더불어 일종의 무모함 등등. 지금은 위에 열거한 것 중 몇가지나 가지고 있을까? 거의 없는 것도 같다.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는 다른 무엇이 생기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예전이 좋았다', '그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면 혼자 씁쓸한 느낌에 젖고 는 한다. 단순히 '지난 날은 아름다웠어라' 식의 추억 씹기면 곤란할 텐데.....

연합회로 보거나 나 개인적으로 보거나 올 가을의 시작은 여느 해와 감흥이 사뭇 다른 듯 하다.

여지껏 해 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연합회와 난생 처음 외국에 가서 생활해야 하는 나. 두 경우 모두 쉽지 않은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살아보지 않은 날들에 대해 어찌 예단이 있으리라는 무릇 산다는 것이란 부딪치며 깨어나가고 거기서 배우며 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뭐 그런 것 아닐까 싶다. 스무살 넘어 열심히 산다고 여지껏 살아온 내 경험이 말해주는 유일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지껏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연합회와 난생 처음
외국에 가서 생활해야 하는 나.
두 경우 모두 쉽지 않은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무릇 산다는 것이란 부딪치며 깨어나가고 거기서 배우며 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것이 아닐까.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란 나무는 단단하기도, 향기롭기도 덜하고 메마른 곳에서 자란 나무일수록 나이테가 촘촘하고 단단하며 향기도 진하다고 한다.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의미를 두고 어렵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며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여러가지 상황들. 여지껏 그런 속에서 살았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

열매를 떨구면서 가지에 온통 상처를 내지만 결국 그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로 변하는 어떤 나무의 생처럼 나 역시 그런 상처들이 내 人生의 아름다운 무늬로 화할 날을 기대해본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좋다.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이 다음에 지긋이 나이가 들어 '당신의 삶에는 향기가 있다'라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어떤 책에서 읽은 '진하게 산다는 것은 세월을 살되 세월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제 새로이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인가 보다.

이제 저는 영국에서의 1년 공부를 위해 떠납니다. 여러가지 걸리는 일들 과감히(?) 자르고 떠납니다. 우리 열심히 살자구요.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 현장취재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편집부

8월 첫째 주, 계절따라 무더운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의 피서행렬이 가장 두드러지는 때에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는 진행되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2회로 진행된 연수는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주최하고 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기획, 주관하여 (주)엘지전자, 교구교재 프리텔, (주)태평양의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초,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4일 창립식을 하였던 전국민보린이 마련한 첫 대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50여 명의 보육시설 원장과 교사들이 참가하여 전국민보린의 조직결속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서울역에서 한시간 정도 좌석버스를 타고 가면 '공룡입구'라는 팻말이 크게 보인다. 이곳에서 하차하여 길 옆의 논과 참외밭, 또는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잠룡을 구경하며 가다보면(혹 운이 좋으면 논 저편에 서 있는 두루미를 볼 수도 있다) 벽 알간 벽돌의, 한눈에 산뜻해 보이는 흥원연수원이 드러난다.

넓은 잔디와 동산이 있는 흥원연수원에서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는 진행되었다.

참가지역 소개와 한숙회 전국민보린 회장의 개회사, 최현숙 지탁연회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있은 후 곧바로 주제강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연수의 본 일정은 시작되었다.

임재택 교수(부산대 유교과,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대표)는 강연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자세, 책임감을 이야기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여 참석한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활동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다시 확인케 하는 힘찬 시간이 되었다.

첫날 두번째 교육은 환경구성워크숍. 원아동미술교육연구소의 이인실 강사는 창의적 미술활동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구성방법을 실제 조별작업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날은 분반교육프로그램으로 아침을 열었다.

국악교육과 영아교육, 동화 및 이야기 나누기 3강의가 각각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에 따른 참여가 있도록 하였는데, 많은 인원의 수용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를 보다 드높이기 위한 진행이었다.



上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강연모습
中 [환경구성워크숍] 조별작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
下 너무도 흥겨웠던 [교사친교의 밤]

특히 국악교육의 경우 2회째 진행되던 8월 4일 잔디밭에서 참가자들과 강사가 한데 어울리는 모습은 다른 교육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마지막 교육프로그램 기획강연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 및 지도」에서는, 신철희 강사(원광아동상담센터 책임연구원)의 강연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진행된 교사연수의 특징은 다양하다.

우선 교사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부분이다. '새노래 배우기'에 지역민보린에서 노래와 율동을 준비하여 참가한 다른 교사들에게 전달해주는 시간이 있었고, 연수원 공간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의 모빌 전시는 참가자들 모두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러면서도 멋진 작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또한 타연수와는 다르게 친교프로그램(이정님강사 진행)이 삽입되어 1박2일의 팍팍한 일정 속에서도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 일상활동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풀 수 있는, 흥겨운 시간이 연출되었다.

이밖에도 미용강좌와 각종 전시마당(교양도서, 그림책, 통신, 동시 등)이 있어서 정해진 강연 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었다.

멀리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새벽부터 연수참가를 위해 분주해야 했던 교사들의 밝고 힘찬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발굴과 그에 따른 연구, 실천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보다 알찬 연수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긴급입수

區立 어린이집運營 改善對策

서울特別市

구립 어린이집의 구직영계획을 재검토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방향을 개선하고자 함

□ 현 황

- 구립시설 - 392개소 35,019명
※ 전보육시설 1,880개소의 21% (이용아동 63,251명의 55%)
- 운영형태 - 사회복지법인등 민간에게 위탁운영
※ 위탁운영기간 : 평균2년 (대부분 계속 연장운영)
- 입소아동선정 - 보호자 신청에 의거 원장이 결정
※ 입소순위 : 면제자, 경감자, 일반주민
- 보육시간 - 12시간 (07:30~19:30)
※ 입소아동의 54.4%가 평균 8시간 보육
- 보육료 - 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범위내에서 원장이 결정수납

구 분	2 세 미 만	2 세	3 세 이 상
일 반 아 동	173,000원	139,000원	88,000원
경 감 아 동	103,000원	82,000원	56,000원

- 운영비 지원 - 전체 운영비의 35% 내외 수준 지원

※ 원장과 보육교사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

- 보육료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
월소득 70~100만원 미만자는 50% 수준 지원

□ 구 직영계획 수립 추진 경위

- 선진제도를 조사하여 보육사업운영 개선방안 수립지시 (시장지시 '94.12.27)
- 일본 동경도 보육사업제도 현지조사 실시('95.2.6~2.10)
※ 일본의 구립 보육소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종사직원은 구직원으로 임용
- 구립 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수립 시행('95.3.30)
- '96 신규 시설은 직영관리하고
- 기존 위탁된 시설은 위탁기간 만료시 위탁체와 협의하여 위탁연장을 결정하거나 위탁 반납시는 직영으로 전환토록 함

□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구 분	직 영	민 간 위 탁
장 점	○ 시설운영의 공공성 확보 - 저소득층, 취업모자녀 우선보육 - 보호자의 신뢰성 제고 ○ 종사자의 신분보장 - 안정된 시설운영	○ 운영의 탄력성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회계처리 간편 ○ 책임경영 - 안전사고 대비 - 종사자 입면 용이
단 점	○ 운영의 경직성 - 보육서비스 획일화 - 다양한 보육요구 대처미흡 ○ 공무원 증원 - 인건비 추가 부담 ○ 기존위탁운영자 반발	○ 사유화 경향 - 종사자 신분보장 불충분 - 가족간 운영 승계 - 위탁부담금을 이유로 연고권 주장 ○ 수익성 치중 - 영아보육 기피 - 미취업모자녀 선호 - 정원초과 - 운영비리 반복 발생

※ 위탁부담금은 신규 위탁시 시설, 설비, 교재교구 비용으로 수탁자가 자진납부한 금액으로 해당 시설에 시설투자비로 원장이 재사용하고 있음.

개 선 대 책

□ 기본 방향

- 구립시설의 운영형태(직영, 위탁)를 구청장이 자율결정토록 함
-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

□ 구립시설 운영형태

-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립시설의 운영형태(직영, 위탁)를 결정함.

※ 운영형태 결정시 고려할 사항

- 지역여건상 운영결손 등으로 수탁희망자가 없는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대안
- 보육시설 직영시 운영전담 인력 확보방안

□ 기존 위탁시설의 운영방법 개선

○ 위탁채 선정방법 강화

- 현재 공무원 위주로 심의위원회로 구성하여 위탁채를 선정하고 있는 것을 구보육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위탁채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함

※ 위탁채 선정기준

-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등을 우선하여 능력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원장의 어린이집 근무경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되 위탁채 명의만 빌리거나 비리관련 해약된 운영채는 제외

- 위탁부담금제를 폐지하여 연고권주장 및 비리발생원인을 제거함
- 재정손실보전책으로 이행 보증보험(또는 재정보증인설정)에 가입토록 함

※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공제회 구성 검토

○ 입소아동 선정강화

-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원장이 입소아동을 임의결정하는 현행제도의 개선

이 필요함

(저소득층 및 취업모자녀보다 일반자녀를 선호하고 영아보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취업모자녀 입소비율 62.7%

- 구립 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 및 취업모자녀(영아포함)를 거주기 관할동장이 확인하여 우선 입소조치하고, 시설정원 범위내에서 일반자녀를 입소토록 함

(영아보육 기피현상 및 일반자녀 선호경향을 방지하여 구립시설의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함)

- 일반주민의 자녀는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시설정원의 10%이내로 입소를 제한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조정하도록 함

○ 운영평가제 실시

- 회계감사 위주의 행정지도감독에서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 평가 결과 우수시설은 포상, 격려하고, 불량시설은 위탁채 또는 시설장을 교체함

○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제 시행

- 정년제 실시로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대처하고 운영쇄신을 도모함
- 시설장 65세(교육공무원 정년 준용)
-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등은 정년제 적용제외

※ '95년도 정년해당자는 구청장이 별도 경과조치 마련 시행

□ 민간 참여 확대

○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유도(예산 기확보)

- 종교시설 명의 건물에도 설치비를 지원토록 보건복지부에 지침개정을 건의함

※ 현재 법인종교시설에 한해서 시설당 2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종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에도 운영비를 지원토록 함(보육교사 1-2명 인건비)

○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기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

-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93년부터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100~200만원 지원하고 있음)

- 신규설치가 불가능한 재개발사업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구립시설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이 필요함
-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중 일부를 선정하여 개발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청장과 아동보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를 지원토록 함

※ 운영비 지원기준 - 영아반 교사 인건비 2명 이내(시비 50%, 구비 50%)

□ 구립어린이집 설치확대

- 이용율이 저조한 구직영 공부방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작은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토록 함
- 보육정원 30명미만의 작은 어린이집은 영아를 중점적으로 보육하여 영아보육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운영비도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함

※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소요정원의 7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함

□ 기대 효과

- 구실정에 맞는 구립시설 운영체계가 확보됨
 - 획일적인 지방침을 지양하고 구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이 함양됨
- 저소득층 및 취업모자녀의 완전 보육체계가 확립됨
 - 저소득시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됨
- 구립 어린이집운영의 공공성 확보로 학부모 신뢰도가 제고됨
 - 영아보육 확대에 안심하고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보육시설의 민간참여가 확대됨
 - 종교시설등 민간재산을 보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 지상강연

지방자치와 보육사업

- 서울시 보육사업을 중심으로 -

최현숙 / 본회 회장

본 글은 지난 9월 1일(금) 삼성화재빌딩에서 있었던 [지방자치시대 환경, 보건, 복지정책워크숍] 토론자료로,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 운영개선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1. 지방보육사업의 의의

1994년,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사업 확충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대략적 모습이 드러났고 아마도 일정기간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보육사업이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적 추세를 보여 긍정적이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 중 많은 것이 보육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장에서 나타나고 보육사업의 성격상 주민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이제부터 지방보육사업이 갖는 비중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방보육사업은 첫째, 중앙의 방침이 지역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둘째, 중앙 방침과 지역주민 요구사이의 괴리를 자체적인 노력으로 메꾸고 셋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육정책결정과 실시과정속에서 주민의사가 관철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서울시 보육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서울시 보육현황

보 육 대 상	복지부 대상추계방식	
	취학전 아동(6세 미만) 922천 명	취학전 아동*여성경제활동 참가율*모의적생자수
	보육대상 84천명 (취학전 아동의 9%)	*보육요구비율(전아동의 25%)
	보육아동 58천 명 (대상의 70%)	서울시 대상추계방식
대 상	미보육아동 26천 명 (대상의 30%)	취학전아동*여성경제활동비율*취업여성 중 기혼자 비율*보육 요구비율(전 아동의 9%)

시 설	보육시설	총 1,908개소
	○ 구립	395개소 35천 명
	○ 민간	1,513개소 29천 명
		{ 놀이방 10천 명 어린이집 14천 명

예산 및 집행

〈예산〉

총 407억 중 주요내역

- 보육시설 운영(298억 원)

보육시설(355개소) 297억 원

공립놀이방(30개소) 1억 원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110억원

- 아동별 지원 (8,500여명) 60억위

<집행>

1) 운영비지원

가) 시설별지원

대상 :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내용 : 시설당 연간 월평균 3천8백만원

나) 아동별지원

면제자 : 전액지원 생활보호대상자, 편부(모)가정

경감자 : 국공립시설 보육료의 50%수준

가구원수	2인까지	3인	4인	5인
가구당(월) 평균소득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까지

다)서울시(자치구지원 포함)추가지원

대상 : 정부지원시설 및 구비지원시설로 선정된 시설

서울시는 표준단가 중 영아간식비, 차량유지비 지급하여 전국 표준단

가보다 2만원정도 적게 책정된

자치구 - 시설운영비지원 (초과영아반보육교사인건비줄기보급)

- 간식비지원(면제아동, 2세미만아동, 장애아동)
- 자원봉사자지원(교사출산휴가중, 0세아5명중자원1명지원)

공립놀이방 : 서울시예산에는 시영아파트단지내 동별 놀이방 1개소를 지원(월 30만원)하는 안이 있음

* '95복지부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가능 / 간식비, 차량유지비, 자원봉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시설운영비 / 시설 증개축비 등 시설기능보강사업비 / 저소득층 연장아동 보육료 지원 종사자경력 인정등 인거비 추가지원 /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 기타 종사자 및 부모교육 지원 각종 행사지원

2) 시설기능보강비 지원

- 신축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대지를 확보하고 시도
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시설 증축 - 공공 및 법인시설
- 사회복지관 부설 설치비
- 학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 시설 개보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 장비비 - 94년도 정부지원 신축시설

3)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복지부 지침에는 서울시에 151개소 민간어린이집에 연 30만원 일시불 지급하는 것이 예산에 나타나있으나 서울시 예산에는 없음.

서울시는 금액이 적으므로 연말에 불용예산으로 100~20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 함. 불용예산 처리와 별도로 본예산에 민간지원금이 설정되고 확대되는 것은 중요함. 이에 대한 시정 필요.

* 따라서 서울시 본 예산에는 보육예산 407억 중 민간(개인), 가정시설에 대한 지원항목이 복지부처침수준을 못미치고, 자치구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보육위원회

- 선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시행령2조3항)
- 구성: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영유아보육법4조2항)
현재 서울시보육위원(총16인)
교수3인, 서울신문편집국장, 교육청초등국장, 원장대표(지원시설4, 미지원1) 자모2(지원시설), 교사(지원시설) 관계공무원1인
- 심의: 시·도의 시행계획, 기타보육에 관해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부지원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이 거의 전부로, 그간 민간 요구사항에 대해 제안한 것이 토론된 바 없음)
- 회기: 연3회

행정서비스

서울시 지침중 세부지침에 나타난 시책(총90쪽)중 미지원시설도 관련있는 사항은 6가지, 미지원만 해당되는 사항은 2가지(공동주택에 가정보육시설설치시 유의사항,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설치 내용)

- 그간 지탁연, 민보련에서 낸 제안서에 대해서는 답신, 처리 없음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1. 서울시 평가(95년3월)

- 구립 시설 사유화 경향-동일인에게 장기간 위탁으로 운영채신 미흡
- 영아와 취업모의 아동 입소기피
- 우수교사 확보곤란 보육교사 월평균급여 65만원(유치원104만원)
*민간은 40-45만원
- 보육료부담과중 2세미만, 두자녀의 동시입소시 부담과중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 미흡

2. 서울신문(95.8.26)

구립시설의 입소기준 강화 예정. 이는 구립시설이 저소득층 및 취업모의 자녀보다 일반주민(미취업가정)의 자녀를 선호하고 영아보육을 꺼리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않음.
서울시 구립시설 어린이집 중 일반주민의 자녀비율이 38%. 이를 10% 이내로 제한

3. 서울시 영보련(95.5)

- 보육시설의 절대부족과 과잉(지역편제 심함)은
- 행정부서가 지역수요에 대한 조사나 진단없이 보육시설 설치
- 구립시설 사유화 경향-위탁제 선정의 문제점(선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 영아 기피와 취업모 아동기피
- 영아보육 환경이 부재
- 건축설계 및 시공자체가 영아를 고려하지 않음. 부실시공
- 8시간 이상 보육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부당대우(시간외 근무수당 없음)
- 높은 보육료(작년대비 31% 상승)
- 우수교사 확보곤란
- 저임금, 장시간, 경력 불인정, 임금체계 불합리, 고졸 대졸이 같은 대우
- 운영의 내실화
- 프로그램의 절대부족, 정보교환의 부재, 전문화된 교재교구, 영양건강에 관한 자료부족, 융통성있는 보육프로그램 실시 불가능, 장학지도 부재,

종합평가없이 회계감사만, 시설 사유화를 부추기는 제도적 결함(불의의 사고, 직원의 사고, 적자운영될때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우 원장의 고의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원장 개인이 다 보상책임)

4. 공보1담당관, 95.8월-「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

(95년 5월 구별로 4개 구립어린이집 무작위 추출하여 100개소 방문조사. 오차한계는 95%신뢰수준에서 4.6%포인트)중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 직업		
전문, 행정, 관리, 사무직	240명	52.4%
자영, 판매서비스직	114명	24.9%
생산, 단순노동직	80명	17.5%
기타(학생, 무직, 아버지없음)	24명	5.2%
모 직업		
전문, 행정, 관리, 사무직	173명	37.8%
자영, 판매서비스직	94명	20.5%
생산, 단순노동직	59명	12.9%
가정주부	132명	28.8%

가구소득(월평균)

100만원 미만	113명	24.7%
100-150만원미만	113명	24.7%
150-200만원미만	134명	29.3%
200만원 이상	97명	21.2%
무응답	1명	0.2%

가구원수

2명	6명	1.3%
3명	137명	29.9%
4명	244명	53.3%
5명 이상	70명	15.3%
무응답	1명	0.2%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립시설에 다니는 아동중 현재 법적으로 저소득층이라 할수 있는 아동은 최대 24.7%이다.)

3. 전반적 평가

1) 서울시 보육사업의 특징은 예산, 행정서비스, 보육위원회, 지침 등 모든 것이 정부지원시설에 한정하여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이 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관여하는 바가 없다. 이는 한편으로 서울시가 현 보육아동의 59%만큼은 공공보육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용자의 모습을 볼 때 민간보육에서 돌보아지는 비슷한 처지의 아동들이 반반정도 양 시설에 나눠있는데 이 경우 아동이 단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현격히 다른 대우를 받는다. (서울시 2세미만 영아의 경우 한 아이가 정부지원시설에 다닐 때와 가정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월11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 반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지원시설	173,000원	139,000원	88,000원
	미지원시설	244,830원 이상	197,740원 이상	121,650원 이상

2) 서울시는 모든 예산과 인력과 수고를 정부지원시설에 쏟고있으나 정작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자체 진단은 매우 부정적이고 불신에 가깝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시설 운영자에게 전가되어 나타난다. (공무원의 책임은?)

3) 407억이란 예산은 현재 보육되어지는 서울시 전체 아동에게 월5만5천원을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그러나 이 집행은 단 한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것은 어떤 아이들이냐가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기로 선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을 모두 받아드리게 된다면 정부지원시설로 위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현재 위탁제 선정은 자치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주민은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위탁되는지 알기 어렵다.

4) 민간운영자의 경우는 국공립과 본의아니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적자운영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근처에 새로이 구립시설이 생겨나면 그동안 몇년을 운영했더라도 인근 4-5개소의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구립시설 설치가 주변조건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보육쪽에서 끊임없이 서울시에 어떤 개입을 요구해왔다. 그 이유는 전체 보육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부 수급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일정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보육료에 의지하여 운영되면 너무 비싼 보육이 되기 때문이다. (보육비용=시설+인건비+아동급간식비등) 따라서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소한 참을 수 있을만한 정도로 보육료의 차이를 줄여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의 입장은 초지일관 난색을 표명했다. 이유는 정부의 할 일은 국공립시설을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지역적으로 일정한 정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공공 보육답게 만드는 것이며 민간시설은 소위 역할과 영역이 다르니(개인의 운영체, 사업체를 국가가 관섭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논리) 자유롭게 운영하라는 것이다. 즉 따라서 규제도 장려도 하지 않겠으며 행정적 관섭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태껏 복지부가 보여온 태도와는 다르다고 본다. 즉 복지부의 입장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일서비스를 행하는 민간에게도 지원을 하겠다는 기본입장이 있다면 서울시는 예산과 조건을 떠나 민간보육의 자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태까지 서울시의 민간보육에 대해 언젠가는 할 조치를 아직 하지않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침하에 민간보육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온 게 된다. 즉 무관여정책이다. 새로 나온 서울시 개선대책안에도 표현만 다를뿐 여전히 그러하다.

최소한의 맞벌이 부부들이 좋은환경에서 적절한 보육료를 부담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싶은 욕구가 공동적으로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체 보육의 50% 가까이를 돌보는 민간보육의 경우 최소한 준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며 만약 극단적인 욕구에 따른 영리화가 일부 있더라도 이것은 전체보육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에서 민간보육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결코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고 전환의 잣대는 시민들의 요구와 생각이라 본다.

4. 개선 사항<서울시 개선안('95.8)을 토대로>

1) 위탁제선정에 관한 사항

- 현재의 조건에서 모든 예산이 정부지원시설로 투입되기에 위탁제 선정에 관한 사항은 핵심적 요소
- 위탁제선정의 책임-자치구
- 이제까지의 선전과정: 선정위원회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공무원 중심 업무가 극히 한정된 지면을 통해서(구민회보) 짧은 기간동안 이뤄지기에(10일) 대부분 사람들은 알기 어려움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제15조1항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외에 보육관련 하위법이하 어느 지침서에도 나와있지않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장에 근거하여 시행될 따름

예) 서울시 모 구의 공고내용

어린이집 위탁 우선순위: 1순위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순위 순위 이

외의 비영리법인, 3순위 비영리단체, 4순위 개인.

위탁조건: 연간운영예산액중 구 보조금 외 자부담이 가능하여야함.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이 있어야함 위탁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시의 소재하여야 함.

신청기간 10일, 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결정통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지함

○ 문제점: 동일법인이 여러개의 어린이집을 위탁받는 사례가 많음.

법인직영이 아닌 개인이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있음

* 서울시 개선안

구보육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객관성 유지

대상을 법인에서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로 포괄적 규정

위탁제 명의만 빌리거나 비리관련 해약된 운영체는 제외

세부적인 것은 구청장이 여건에 맞춰서 하도록 함

* 제안

위탁에 관한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이를 꼭 조례로 제정해야 서울시는 각 구를 뛰어넘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본적 방침과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 법인의 운영시설수, 평가, 해약, 등등의 정보 및 타구와의 처리문제 등)

- 일정 지역에서 한 법인의 위탁의 수 제한되는 것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모범적인 곳은 얼마든지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어서 제한이 필요없다지만 이러한 것이 긍정성 보다 부정적 요소(명의 빌려주기)가 더 많으므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기본 연구 필요.

선정결과를 공개적으로 알 수 있어야.

2) 감사: 현재 지원시설의 경우 회계감사뿐이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면 오히려 감사에 걸리는 실정

* 서울시는 이후 운영전반에 걸친 종합평가는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포상과 교체를 하기로 함.

* 제안

평가원칙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수렴과정을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개관적 처리기준을 명시해야.

평가위원회에 대한 대안마련, 이로서 종합평가가 또다른 옥쇄가 되지 않고 실제 탄력성있는 운영의 근거가 되도록.

3) 재위탁: 재위탁은 선정과 동일한 비중의 사업.

현재의 경우 1-3년이란 위탁기간 정해져 있으나 거의 대부분 그대로 연장. 심지어는 상당한 무리를 빚은 위탁체의 경우도 원장만 교체한 채 그대로 지속. 현행 모범에는 위탁체와 운영자 양자간의 쌍벌규정으로 되어있으나 거의 진행되지않고 있으며 이의 근거도 없이 공무원 재량에 의해 진행.(공무원에 종속)

정부가 그간 법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은 부담능력과 운영능력, 이는 자체 감사의 능력을 인정하기때문. 하지만 그 어느곳도 거의 이뤄지지않으므로 이러한 조건이 명의만 빌려주는 데 악용될 소지가 충분.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해야 할 것

선정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있어야

5. 정부지원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95.8. 서울시 영보련 건의안 중에서)

(문제점, 건의안)

1) 제도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일선 공무원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운영이 제도를 따르기 어렵고 아동보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한다.

2) 영아를 기피한다는 서울시의 평가가 있지만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평가이다.

1년사이 갑자기 인상된 보육료-영세한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에 부담.

영아를 수용할 만한 환경이 마련되지않았다.

3) 예산문제

- 인건비 (원장, 교사) 현실화

- 아동의 보육료 낮추고 국비나 시비예산 증액

- 예비비 책정

4) 경력인정 호보문제 (지침과 다름)

5) 시설보수 시공시 시설자와 상의, 위기시설보수시 선보수 후지원

6) 보육위원 재구성 및 활성화

7)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8) 아동초과의 합리성(10%)

9) 조례제정

10) 시설장의 자율권 보장

6. 민간(가정)보육시설의 개선사항(95.8 서울시 민보련의 제안서중에서)

1) 시설 확충

가) 비용이 많이 드는 구립시설에만 시설확충을 한정하지 말고 임대(서울시 소유로 임대해 주는) 민간어린이집을 활성화 하여 민간시설에도 확대되도록 나)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보육시설에게도 위탁을 확대(한지역에서 3년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로서 종일반을 중심으로 하며 영아전용시설인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2) 시설 운영

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연장보육을 할 경우에는 민간시설에도 운영비 지원을 해야)

교사에 대한 재교육비와 교사수당을 지원

3) 아동지원 기준 상향조정

경감아동이 현재 3인가족을 기준으로 원평균소득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경감아동에 대한 보육료 50%지급이 구립시설 표준단가에 의해 산출되어 지
급되는 것을 민간 표준단가에 맞춰 지급되도록
두자녀 보육시 한자녀 보육료 50%감면 혜택이 민간시설에도 적용되도록
영아간식비 지원은 모든시설에게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4) 자치구비 지원 지원대상시설을 정부 및 구비지원시설로 한정된 것을 폐지해 야

5) 국민연금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시설실시에 대해 융자대상을 담보능력만에 서 일정한 자격제한을 두기를

대출을 받은 시설의 원장이 미자격자인 경우 단기간 원장교육을 통해 양성
화하는 것은 시정하길

전세보증금의 담보율을 현 50%에서 일반담보육 80%로 조정

소액대출인 시설 설치비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6) 용도변경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1995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시 장애인자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 이에 대한 대안

서울시 보육사업이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보육사업의 전반적 중간 평
가가 이뤄지면서 이후 사업들이 계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파악, 공급파
악 예산집행등)이제는 서울시가 중장기적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적극
의견을 수렴할 시기라 본다.



■ 지상강연

서울시 보육사업에 관한 제안서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이 제안서는 지난 8월 30일 서울시 의회 복지분과위원들과의 면담시 서울시
민보련에서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1. 서울시 보육현황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실태

현대 사회에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수요의 증가로 인해 현재 보육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및 서울시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시설에 한정된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의 비용부담이 '수혜자부담의 원칙'이어서 민간보육시설과 구립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의 차이가 심합니다.

'95년도 표준보육단가

(원/월, 인)

구 분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2세 미만	197,780	244,830	286,530
2 세	164,010	197,740	286,530
3세 이상	93,000	121,620	167,520

(보건복지부; 95년)

정부는 95년에 처음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교재교구비를 책정하고 점차적으로 보
육료를 자율화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사보육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1995년 7월 31일 현재 서울시의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79%를 민간이 운영
하고 있으며, 보육아동수도 전체 아동의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육현황

구 분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놀이방	합 계
보육시설수(개소)	395	604	909	1,908
보육아동수(명)	35,000	18,000	11,000	64,000

서울시는 95년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안을 발표하였지만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안이 제외되어 많은 긍정적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편중된 개선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한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적자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년 50%이상의 시설이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구립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시설지원이 차별적인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과 부모가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사회복지차원에서 동일한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보육사업 발전계획이 수립되길 바라며, 몇가지의 본회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2. 제안사항

1> 시설 확충에 대해

1) 비용이 많이 드는 구립시설에만 시설 확충을 한정하지 말고 임대 민간어린이집을 활성화하여 민간시설에도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고, 그 규모도 100명 이내의 중소규모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립형 시설은 1개동에 1개씩 설치하고 그외의 시설은 중·소규모로 곳곳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보육시설에게도 위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탁 보육시설은 공공성이 명확해야 하므로 위탁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상선정기준을 민간시설에 확대하여 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로써 종일반을 중심으로 하며 영아 전용시설인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시설 운영에 대해

1)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연장 보육을 할 경우에도 민간시설에도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보육은 구립시설보다 민간시설에서 대부분 전담하고 있으나 민간 시설에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보육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을 통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2) 교사에 대한 재교육비와 교사 수당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 재교육의 경우 구립시설의 교사에게 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교사 재교육의 기회는 어느 시설의 교사이든 모든 교사에게 필요합니다. 만일 재교육의 기회가 어렵다면 재교육비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변동(이직률 49.9%)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시간의 근무(하루 12시간)와 낮은 임금(월평균 45만원)으로 이것은 유치원교사의 월평균소득이 104만원과 구립시설의 경우 65만원인 것에 비해 너무 열악한 조건입니다.

이의 보완으로 교사 수당을 지원하여 그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아동지원에 대해

1) 경감아동의 기준이 현재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소득이 80만원인데 이것은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2) 경감아동에 대한 보육료 50% 지급이 구립어린이집 표준보육단가에 의해 산출되어 지급되는 것을 민간시설의 표준보육단가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두 자녀 보육시 한 자녀의 보육료 50% 감면 혜택이 민간 시설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민간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면 보육료의 산출근거는 민간 시설의 표준보육단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4) 영아간식비 지원은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4> 자치구비 지원에 대해

1) 지원대상시설을 정부 및 구비지원시설로 한정된 것을 폐지해야 합니다.

(서울시 '95 보육사업 세부지침 148쪽 참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기능을 명시하고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기타 종사자 및 부모교육 지원, 각종 행사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보육사업지침서 78쪽, 복지부 95년).

따라서 서울시의 지침은 보건복지부 시행지침에 위배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5> 기타사항

1) 국민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실시에 대해

융자대상을 개인, 기업체, 단체, 종교시설등으로 담보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일정정도 자격제한을 두는 것과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은 시설의 원장이 미자격자인 경우에 단기간(3개월 과정)의 원장교육을 통해 양성화하는 것은 전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니 시정을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담보율을 현 50%에서 일반 담보율인 80%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대출인 시설 설치비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용도 변경에 대해

장애자복지법에 의해 1995년부터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시 장애자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되지도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행정상의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3) 단체등록에 대해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를 공식단체로 인정하여 합법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민간시설을 대표하여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사업방침에 대해 사전 논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3. 조례제정의 필요성

보육사업의 필요성은 현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에 따라 97년까지 보육시설의 수를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나 방침은 시설수 확충에만 치중하고 그 규모도 점차 대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모든 시설을 구립시설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형태를 위해서는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집 근처에 세워져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주변 가까이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사업을 활성화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활용하여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수급, 아동상담,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육위원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육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활발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역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보육사업은 이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공공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감아동이나 부담원칙에서 벗어나 일반 맞벌이 부부의 자녀인 일반아동에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가 공동분담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육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곧 우리사회의 미래가 될 것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현재의 보육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선업회원을 모집합니다 — "(가칭)그림책 모임"

1. 그동안 사업에 대하여

- ★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서적을 연구 / ★ 그림책을 함께 읽고 비평 / ★ 어린이집 아동에게 그림책을 들려주고 그 반응을 관찰 / ★ 어린이집의 독서영역을 만들고 책 읽는 분위기 조성 / ★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고 수실 권의 정서 확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첫수를 거듭할수록 그림책을 마음의 양서로 받아 들이게 되고 회비로 토크이 구입한 그림책을 아동에게 꾸준히 제공하니 아이들에게 인기도가 올라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일하는 교사들도 그림책 모임을 기다리게 되어 나날이 모임이 풍부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함께 이 기쁨을 나눌 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을철 개편으로 새롭게 단장을 한 이 모임에서 모임 이름도 새롭게 공모하며 교사도 2인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린이와 그림책(마쭈이 다다시쑈, 샘터사)」을 읽고 원고지 5매 이하로 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입회비는 2만원입니다.

3. 연석 바랍니다.

고영미 (0345)495-3962 진달래동산어린이집 호출 015-374-0849
조용란 (02)296-1012 자택

■ 새날을 열어가는 사람들 - '따도학교 영상캠프'에서 만난 사람, 윤지효

전혀 생각 없는 아이로 취급하진 마세요

주혜민 / 편집부

우리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 순 없을까?

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부딪히며 영상으로 표현해보자.

.....

그렇게 영상 읽기는 시작되었다.

.....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지난 8월1일 아침.

「푸른영상」 봉고차를 타고 천마산 산기슭에 자리잡은 수련장으로 향하였다. 남편덕에 걸다리 겨 온 '따도학교 영상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변변히 여름휴가를 쉼길 수 없는 우리로선 일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남편의 꼬드김으로 따라 나서게 되었지만 내겐 새날을 열어가는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다.

수련장에 도착해보니 '따도학교 영상캠프'가 써 있는 서둘버스가 어느덧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빗물이 흠뻑 젖어 그 내음을 내뿜는 풀잎들의 싱그러움 못지 않게 영상캠프에 참여한 이들은 세대를 뛰어넘은 초급 X세대들이었다. 풋풋한 모습이 첫 만남의 씩씩러움으로 더욱 향기를 더했다.

따도학교는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학교의 준말이다.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대상뿐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곳이 따도학교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청소년 영상캠프를 준비해온 박상영씨(따도학교 교사)의 말이다. 따분하고 형식적인 질문이지만 이번 캠프의 취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청소년들은 긴장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인 습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과 상상력이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좀 더 탈피하여 맘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3박4일의 영상캠프는 진행되었다.

..... 임모양이 오자고 했고, 또 피서도 못갈 판이라 오기로 했다. 물론 단지 그것때문에 온건 아니다.

..... 영상이란 거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도 했고 -씨익

..... 음 원하고 있는건

..... 생활에 대한 내 태도를 좀바꾸고 싶다. 또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남는게 있는 캠프였으면 정말

..... 좋겠다. 너무 많은가?

덕지 덕지 한쪽 벽을 장식한 글들을 훑어보면서 우리의 새날 친구의 글이 눈에 띄었다.

씨부렁(영상캠프 기간 중 자신이 정한 별명을 붙였다).

윤지효.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는, 키도 눈도 작은 초급 X세대가 이번 새날을 열어가는 사람의 주인공이다.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 다더니 첫날의 어색함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도 남김없이 씻겨져 있었다. 밤새 쿵쾅거리며 깔깔대던 그 웃음들. 그래서 그런지 이른 아침에 있는 총명상 시간에는 다들 맥이 없다. 씨부렁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캠프기간 동안에 태도를 좀 바꾸고 싶다고 그랬는데....."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캠프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나의 좋지 못한 태도를 바꾸고 싶었어요. 남들에게 비웃는 듯한 말투나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고치고 싶어요."

"친한 친구들도 그렇게 평하나요? 그런 평가와 씨부렁이 생각하는 자신이 같다고 생각하는지요?"

"냉정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단세포 같다고도 해요. 독특하고 재밌다, 싸이코 같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이야기 하는 것과 내 자신을 생각하면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완전한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냥 어린 나이이고 철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한 인간을 운운한다는게 놀라게 했다. 이런 나의 편견이 어느덧 기성세대의 문턱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 같아 섬찟했다.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레디! 큐!

몇일을 쫓 보면서 느낀 씨부령은 한마디로 재미있는 아이였다.

"학교생활엔 싫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많이 때리는데 너무 싫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따도학교처럼 자유분방하게 선생님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학교였다면 좋겠어요."

뭔가 어른에 대한 반항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느끼는 씨부령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 것일까?

"남에게 피해 안주고 생각이 깨어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애들이 말하면 말대답이라고 하고 여자가 말하면 수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씨부령의 이야기 속에서 굴절된 우리의 현실을 본다. 절대 권력 중심의 사회 - 어른은 아이를 하나의 종속물로 여기고,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는 -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이 사회의 단면을 씨부령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시대와 사회는 변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다고들 말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감각적인 것에만 탐닉하고 소비성만 질다며 요즘 아이들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 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TV와 언론,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생각해요. X세대 X세대 하면서 뭔가 문제있는 아이들 취급하는 것이 맘에 안 들어요. 전혀 생각없는 아이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값싸고 험한 옷을 입어도 당당할 수 있는게 저희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활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즐길 수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행동도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개념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무슨 소리냐! 라고 따지고 싶어요."

확실히 내가 중학생이었던 시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씨부령의 도전적인 모습에, 논리적인 이야기에 번번히 놀라고 있었다.

역시 초급 X세대 다웠다.

.....

캠프 기간 내내 비가 내리다 마지막 전날 밤이 되어서야 구름이 걷히고 별과 달이 떴다.

정말 오랜만에 모닥불에 둘러서서 춤도 추어보았다. 모두들 충족감에 쌓여서일까? 뭔가 해방된 기분으로 10대에서 40대까지 광란의 밤을 보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 걸친 영상제작과 시사회를 마치고 난 후의 흥겨운 심정이 주는 해방감일 것이다. 씨부령이 속한 팀은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8명이 1조였다). 그 안에서 씨부령은 감독으로 뽑혔다. 노래를 선정하고 매 장면을 구상하고 촬영하고(필자는 여기서 엑스트라로 두 장면에 출연했다) 모두들 열성이었다. 나올 것 같지 않던 작품은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이번 영상캠프를 권유했던 친구 '나발'과 함께

가고 무사히 모든 팀들이 제작한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감독을 맡으면서 느꼈던 점이 궁금했다.

"영상이란게 그냥 보는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감독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감각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언니들이 도와줘서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성하고 나니까 한 컷 한 컷에 환호성을 올리고 싶고 기뻐요, 만족하구요. 절묘한 실수가 정말 멋있었어요(장면 중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장면이 멋있게 찍혀 모두에게 칭찬을 받게 된 일이 있었다)."

"레디! 액션!을 부를 때 느낌은 어땠나요?"

"쑥스러웠지만 아!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씨부령이 눌러쓴 모자와 연출기획안을 들고 카메라 옆에 레디! 액션!을 부르는 모습은 감독다웠다. 먼훗날 여류 영화감독으로 서 있지 않을까? 피아노의 제인 캠피온감독처럼.

썩 잘 어울리는 모습에 영화를 만드는 꿈을 꾸지 않을까 싶어 물어보았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사실 요즘이 힘들었거든요. 혼란 방황인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몰라 실수를 많이 해요. 우선 못봤던 영화를 많이 보고 싶어요. 책도 읽고 싶구요. 방학동안 [문자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재밌는 분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동안 보았던 영화 중 감동적이었던 영화는 어떤 거였어요?"

"[조이러클립]과 [쇼생크의 탈출]이었어요. [쇼생크의 탈출] 중에서 앤디가 죄수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장면과 그의 흑인친구가 '나는 소망한다'라고 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조이러클립]은 엄마와 딸간의 잔잔한 이야기가 좋았구요.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권해주었던거 같아서 자다가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마 그 친구도 제가 이해가 안됐겠지요."

순간 친구를 만난 듯 했다. 나 또한 두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아졌다. 한참을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흔히 쉽게 생각하는 어린 친구



캠프 첫날 티셔츠에다 글을 써서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 [웬? 따도학교 영상캠프]

에 대한 -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어느새 내겐 사라진 지 오래였다. 10대와 30대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게 신기했다. 혹자는 나의 철박서니를 논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자.

그가 앞으로 보고 싶은 영화가 어떤 것인지.

바이올린 플레이어, 레옹, 피아노, 그린 파파야의 향기, 포카혼타스.....

이야기를 하면서 신나하는 나와는 달리 씨부렁은 점점 눈이 감겼다. 어제 밤새 논 덕분일 것이다. 더 이상 볼 수 없어 몇가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었다. 꿈많은 당당한 씨부렁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군지 궁금했다.

"부모님이예요.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인것 같고 특히 저를 낳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

드디어 끝났다.

몇날의 뜨거움은 아침의 고요함에 씻기고 또 새 아침은 왔다.

아침을 먹고 강당에 모여 몇몇이 모여 노래를 부른다.

내가 찾는 아이

.....

우린 흔히 볼 수 없는 아이들을 찾아 나선다.

노랑들의 능글맞은 여유로움 보다 아이들의 들뜬 표정이 아름다운 날들이었다. 매미 소리, 졸립다.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잠깐 참자. 이 한마디는 들어야 되겠지?

"즐거웠던 일이지? 뮤직 비디오가 완성되서 보았던 것 하구요, 캐나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거예요. 왕이 사람들에게 'E'를 'B'라고 세뇌시킨 만화 말이에요."

사물의 옆면과 뒷면을 그려보는 힘.

우주 속에서 미지의 밀림 속에서, 말은 없지만 충분히 전해들은 마임처럼 아주 작은 먼지로 무한히 공간을 헤맬 수 있는 자유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편의 영화로 만드는 작업

영호 속에서 영화를 본다.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읽는다.

설익은 밥처럼

나열식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나를 욕하진 마라.

이렇게라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혼란의 30대를 욕해달라, 차라리.

얼토당토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언어들.

그러나 눈을 감고 보라.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살아 숨쉬는 생명 속에서 우리는 'E'를 'E'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을 전해줘야 하는 의무를 반드시 발견해야 됨을.

진정 새날을 열어갈 이들에게.

<책속의 책>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

한국어판은 지난 7월 3일 작성되었으나
영문 번역으로 인해 발표가 늦어졌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에서는
11월 제네바회의에 한국 민간기구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현실태를
밝히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서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하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충하고자 민간단체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는 우선, 한국 정부가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동권리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진전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해 취해야만 했던 조치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보고서는 정부가 취한 정책, 법, 프로그램, 서비스를 나열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약의 충분한 이행을 가로막는 '제한'과 '장애요소'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조약이 정한 정부의 보고의무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민간단체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에서 조약이 이행되는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권고사항을 제기함으로써 정부가 고무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조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한 시도를 하도록 만드는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주로 일반적 논평과 특별논평, 권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에서의 조약의 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으로 시작된다. 첫번째 논평은 조약의 홍보의 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번째는 이데올로기적 장애요소를, 세번째와 네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정부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조약을 홍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정부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 조약의 이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소인,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3) 정부보고서는 조약의 이행을 위해 일하는 많은 정부기관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정부보고서는 조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민간단체의 독립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협력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의 4가지 지적에 덧붙여 민간보고서는 구체적인 논평과 권고를 하고 있다. 이부분은 조약의 실제적인 실현정도를 제시하기 위한 양적·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그것들의 이행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고 조약의 이행을 위해 추

가로 요구되는 정책과 수단을 상세화했다. 민간보고서는 또한 각 부분마다 '권고'사항을 첨부하고 있다.

민간단체보고서의 체계는 정부보고서와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정부보고서의 장과 절을 따르고 있다. 번호가 빠진 장과 절은 민간보고서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민간보고서에서 서술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읽으시는 분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2장 조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 정부 보고서가 인정한대로, 한국 정부는 아동 권리 조약을 모든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홍보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 위원회>에 넘기고 있으나 그 홍보 성과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권고>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각 정부 기관, 대중매체는 물론 각급 학교와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적극적인 조약의 홍보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제1절 조약의 규정과 국내법과 정책의 조화 방안

2. 아동을 인식하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기본적인 시각은 조약에 관계없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제도하에서 아들은 '가산' 내지는 '부모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친권제도는 조약이 천명한대로 아동을 권리주체로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전면적인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수립·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권고>

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를 실정법으로 보장하여 전통적인 친권개념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2절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과 협약 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3. 아동의 인권, 복지, 교육을 위한 업무는 각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조약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약 이행을 위한 실태파악과 업무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권고>

위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아동인권·복지위원회를 중앙기관으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아동 권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관변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아동의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진보적 민간단체에는 정부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권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제3장 일반원칙

제2절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조약 제 3조)

5. 정부보고서는 각종 정책과 법이 아동 이익의 최우선을 보장한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은 민법상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가족법제를 개정한 1990. 1. 13.자 개정민법 제 909조 제 1항의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라는 규정은 한국의 아동법제의 현위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81. 4. 13.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제 1조), 보호자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음(제 3조 제 2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복지 관련 법령상으로는 소위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전면내 내세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위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 제 21조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

조약과 아동복지법의 취지대로 아동의 권리, 교육, 복지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조약 제 6조)

6.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가장 큰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이다. 한국의 연령별 사망원인(1989년)을 보면 아동의 45%이상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전인구의 11.9%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에 비교할 때, 약 4배나 되는 비율로서 아동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92). 아동들이 당하는 불의의 사고에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이는 질주하는 자동차들로 인하여 아동들의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권고>

아동 교통 사고율을 대폭 줄이고 도로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

제4절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조약 제 12조)

7.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은 한국의 전통적 사고와 가장 갈등이 첨예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조항이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는 이 조항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용하기 위한 진지한 접근이 부족하다. 현실을 보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는 경향이 다분하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과양의 경우 아동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때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권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이 조항의 취지를 한국 현실에 적합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실현해야 한다.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3절 표현의 자유(조약 제 13조)

8. 일상생활에서 특히 학교생활에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 형성과 의견교환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학교내 비리를 비판하는 경우에 정학, 자퇴강요, 퇴학 따위의 가혹한 징계처분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징계절차는 학교장과 교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징계처분을 재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4절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조약 제 14조)

9.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상당한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남아있고 아동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1994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청소년 단체 회원에게 국가보안법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10.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없고, 학생의 주거지에 따라 정부가 배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들 중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들은 특정 종교를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종교를 믿는 학생이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배정받게 되면 그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권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교 배정 과정에서 학생의 종교를 고려하거나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조약 제 15조)

11. 한국의 학생들에게 결사와 집회의 자유는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자치그룹 활동은 학교당국에 의하여 제한된다. 대부분의 학생회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 밖에 없도록 통제 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생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반면, 학교 주최 행사나 정부가 요구하는 집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빈번히 강제로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

제6절 사생활의 보호(조약 제 16조)

12.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속옷 검사, 성적 공개, 우열반 구분 편성 등으로 사생활이 공개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다.

제5장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조약 제5조, 제18조 제2항)

13. 한국은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과 부모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미비로 가정파괴와 요보호아동 양산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14. 민법상의 친권제도에 관한 제규정은 아동을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는 객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에서 아동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요보호 아동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권고>

법과 정부 정책은 가족 기능의 유지와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1)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복지 서비스 체계의 운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2) 이혼 시 아동양육의무의 이행과 친권행사자의 지정을 법률상 전제요건으로 하고, 이를 사회복지기관등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3) 입양규정에서 양친자에 대한 제반요건의 강화, 양친자에 의한 파양의 엄격한 제한 등을 명시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조약 제 9조)

15. 민법 제 924조에 의한 친권상실 신고제도는 친권이 아동복리를 지키기 위한 의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유기 등과 관련하여 가해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피학아동을 위한 치료와 개입 등을 위한 가족지원 및 보완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연계운용 등 조직적인 복지서비스 체계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16. 민법 제 837조의 2에서 규정된 면접교섭권과 기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서 의사표시권이 인정되는 연령 기준인 15세는 비현실적이다.

<권고>

현재의 아동의 교육수준과 발달정도, 그리고 기타 제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고려하여 의사표시권 인정연령이 15세에서 현격히 낮춰져야 한다.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조약 제27조 4항)

17. 아동 양육비의 부모 책임과 관련하여 국내법상으로는 민법 974조의 부양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권고>

아동의 양육과 보호책임을 방지하는 부모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대표로서 부모들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의 회수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5절 가정환경 상실 아동(조약 제 20조)

18. 부모의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환경 상실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92년 5만 7천 쌍이 이혼하여 지난 20년간 이혼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혼자사는 가구도 15년간 3.6배나 증가하여 1백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소년, 소녀가장도 93년도 7천3백22명으로 8년 전보다 50%나 증가하였다(국민일보 95.5.14). 부모 가출로 인한 소년 소녀 가장세대와 편부·편모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부스리기선교회(1994년)가 조사한 결혼가정 자녀 100명 사례분석에 의하면 7-8세 이전에 부모가 가출하는 경우가 37명에 이르고 있다. 부모가 가출한 경우의 부모세대도 1960년대 이후의 도시 빈민 1세대로서 빈곤 가정에서 방치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인 경우가 많다. 결국 가정 환경 상실은 계승되고 있다.

가정환경 상실 아동에는 스스로 가정을 포기하는 아동들도 포함된다. 1993년의 조사(세계일보, 1993.10.23)에 의하면, 중고생 중 63.4%가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다. 가출충동을 느낀 경우 실제로 가출하는 경우는 10명중 1명이며 청소년 가출의 절반이상이 국교 시절에 일어나고 첫 가출 평균 연령도 12.8세로 낮아지고 있다(형사정책 연구소, 1992. 6. 30).

<권고>

가정결손과 아동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등의 프로그램 확대, 가정을 다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가출아동을 위한 쉼터와 그들의 가정복귀를 위한 치유센터가 필요하다.

제6절 입양(조약 21조)

19. 한국의 입양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입양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권고>

1) 입양은 합법적인 기관을 통한 양부모의 사정 및 교육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입양은 단순히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진정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를 사정하고 교육한 후 입양허가를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비합법적으로 아동을 국내가정에 입양시킨 경우의 처벌조항도 아동복지법 제 18조(금지 행위) 제 6호, 제 34조(벌칙) 제 4호, 그리고 199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간에 처벌 규정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 처벌이 규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강화되어야 한다.

2) 입양아동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아동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의 나이가 15세 미만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기준이다. 이 연령 기준은 낮추어져야 하고 아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도 3세이상의 아동은 최소한 입양되기 전 입양될 가정에서의 적응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에 대한 아동의 의사도 물어야 한다.

3) 입양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신분과 부모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입양되고 있는 아동의 99%이상이 친자로 신고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비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양부모는 법을 어기게 되고 입양아동은 자신의 생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호적에 친자로 입적되고, 입양전의 호적은 가정법원이 보관하는 이중호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4) 파양과 친자관계부존 재확인소송을 금지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파양선고를 내리면 양부모는 더 이상의 부양책임이 없어진다. 이와같은 제도는 양부모의 입장만 참작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동의 파양은 20세가 되기 전에는 불허하고, 가능한한 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입양되고 있는 아동의 99%이상이 친자로 입적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속에서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시급한 것은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친자관계부존 재확인소송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양부모가 아동을 더이상 양육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친자관계부존 재확인소송을 통해 부모와 자녀관계를 단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절 아동학대와 방임,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조약 제19조와 제 39조)

20.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수용하여 법·행정절차·지원기관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고>

1)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적보호는 매우 미약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 9호가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유일한 법적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법 제 34조 제 3호는 학대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자체가 매우 미약할 뿐 아니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없어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에 별도의 아동학대예방법이 필요하다.

피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에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 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이 동법 "제 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하는 등의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공무원이 가정에 들어가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 하면 "가택침입죄" 데리고 나오면 "아동유괴죄"를 범하게 된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의 경우 직계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아동의 성적학대도 70%이상이 아동의 직계가족, 친척 또는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개입을 보장하는 법의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체벌에 관해서는 교육법 76조에 "각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벌을 한 교사의 형사적 책임문제와 폭행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6건의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승소한 경우는 단 1건의 판례(대법 78조 203, 1978년 3월 14일자 판결)뿐이었고, 체육교사가 반공훈련에 불참한 학생을 구타하여 두개골 골절로 학생이 죽은 경우에도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았다.(서울고법 1978년 6월 23일자 판결)

2)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

신고가 없이는 아동학대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는 CDB(Confidential Doctor's Bureau)와 같은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신고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아동학대 전담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3)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학대예방협회에 신고가 들어오면 심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일시보호시설(서울시 아동상담소, 소년의 집 등 전국적으로 시, 도마다 1개 이상 있음)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협회나 대학병원이 잠정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으나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은 물론 가해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치료기관 등이 설립되고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개발,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감사(조약 25조)

21. 영·유아시설에 편중된 현행 아동 복지시설 체계로는 아동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아동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권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자립지원시설, 정서장애아시설, 가출청소년쉼터, 결손가정치유센터, 약물치료시설, 피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기관 등이 시급하다.

22. 아동복지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유아시설도 가정 대리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을 '입소자비례지원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시설의 대규모화를 조장하고 있다. 93년 현재 영아시설 평균 59명, 육아시설 평균 78명은 88년 일본의 23명, 50명에 비해 두배 규모이다.

<권고>

점차로 대규모시설을 소규모 그룹 홈으로 전환해야 한다.

23.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10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성폭행, 구타, 강제사역, 협박, 친권포기강요, 보조금 횡령 등 시설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적잖게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도·감독에 의해 적발되거나 적합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드물다.

<권고>

시설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6장 기초보건과 복지

제2절 장애아동 (조약 제23조)

24. 장애아동의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보고서는 장애아동을 전체 아동의 0.76%인 10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보고서가 인용하고 있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1990년도 자료는 장애아동의 출현율을 3.72%로, 교육부의 1994년도 자료는 2.44%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장애인단체에서는 전체아동 9백17만8천8백11명의 10%인 9십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고>

장애아동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5. 정부보고서가 기술하듯이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성인시설에 단순히 수용보호되고 있다. 또한 운영중인 시설의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도 책정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데 급급하고 있다. 각 시설들이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관계로 장애아동들은 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권고>

장애아동의 보호, 요양시설은 장애아동의 유형과 정도 그리고 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분리 운영되어야 하고, 전문가에 의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26.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고 특수교육 수혜율이 저조하다.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1994, 931-932)는 특수아동 중 불과 12.6%만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다고 추정한다. 기존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특수학교에서는 기본시설, 기자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적절한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장애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권고>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학교의 설립은 특수아동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육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점차로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7.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2%이나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은 0.7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업체는 0.42%에 불과하다.

제3절 보건서비스(조약 24조)

28.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본인부담율이 과중하기 때문에 빈곤 가정의 아동은 사실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초음파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촬영 등의 검사는 값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예방서비스 역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진의 남용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많아서, 종합병원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55%이고 입원의 경우는 50%이상이기 때문에 빈곤 가족의 아동은 사실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한겨레신문 1995. 1. 15).

한국의 경우는 아동종합병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환자들은 소아과의 치료를 받거나, 주로 성인 환자를 다루고 있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신체는 성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아피부과, 소아내과, 소아외과, 소아정신과 등과 같은 진료과목별로 아동 전문의가 양성되어야 한다.

제4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조약 26조와 18조 3항)

29. 사회보장 예산이 매우 빈약하고, 아동수당제도가 없다.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의 자료(1994)에 따르면, 1989년에 선진국의 사회보장비는 GDP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복지재정은 GDP의 1.4%에 불과하다(IMF, 1991). 또한 세계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총예산대비 복지예산규모는 6.38%로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방글라데시(12.3%) 스리랑카(18.6%) 등에도 못미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30. 한국의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더불어 4년이란 짧은 기간에 외형적으로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정부의 예산규모를 보면, 1991년 419억원에서 1994년에는 1,188억원으로 3년동안 2.8배가 늘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사업이 아직까지는 정부의 자유재량주의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서 공보육보다는 사보육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추계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대상 아동수는 103만명인데 비하여 1994년 12월 현재 8,975개 시설에서 21만9천명 만이 보육되고 있어서 전체 보육수요의 22%에 불과하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부재로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육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육시설 확충이나 비용보조 등이 아

등의 권리개념에 입각하지 않고 정부의 행정편의에 의해 진행된다는데 있다. 먼저 양적인 확충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이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중소도시 및 농촌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수혜자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한국 보육이 공보육적 성격보다는 사보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급한 편이어서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연장보육 등 다양한 보육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학교'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몇몇 민간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상 아동의 1%도 방과후학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과 취업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대상 아동 모두가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학교, 유아원, 유치원, 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제7장 교육, 여가와 문화적 활동

제1절 교육(조약 제 28조)

31. 94년 학급당 학생수는 국민학교 37.7명, 중학교 48.9명, 고등학교 47.4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과밀학급이어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국민학교 약 120만명(전체 국민학교의 30%), 중학교 약 100만명(전체중학생의 40%), 일반계 고등학교 약 40만명(일반계 고등학교의 33%), 실업계고등학교 약 30만명(실업계 고등학생의 35%등)으로 전체 학생의 34%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당 학생수가 너무 많은 거대학교도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

가. 학교의 종류

(1) 국민학교

32. 2부제 수업이 많이 줄긴 했으나 아직도 1학년 1,027학급, 2학년 643학급, 3학년 125학급이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생활이 불규칙하고 자신들의 교실이 없어 상당히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33.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가 높고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95년까지 전국 국민학교와 분교가운데 10%를 통폐합시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교육의 평등권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농·어촌 인구를 격감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예로 경기도 가평군의 <두밀분교>는 통합에 반대해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을 1년여 이상이나 가르치기도 했다.

34. 국민학교 학교급식은 의무교육과정의 내용으로서 국가가 시설이나 관리비 등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94년 11월 현재 38.2%의 국민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제 14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97년까지는 전면 급식을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그 급식 시설비를 전적으로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남은 물론 일부 빈민지역의 학교는 급식을 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2) 중·고등학교

35. 중고등학교의 현실은 학생의 자유가 통제되고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이 제약을 받아, 마치 상급학교의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숨막히는 병영처럼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는 규제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민주적이다. 학생의 지도 과정에서 부당한 체벌과 폭력, 인격 모독행위 등 교사들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 징계는 상담과 대화를 통한 지도이기보다는 처벌과 학교로부터의 분리 위주로 되고 있다. 징계와 학습부진등의 이유로 인하여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 마지막으로 시설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에 맞지 않는 작은 규모의 교실과 책걸상, 비위생적인 화장실, 복지시설의 미비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3) 유아교육

36. 유치원은 기간 학제에 포함되지 않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의 유아들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유아교육을 담당하지 못하고 전체 유치원생의 78%가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공교육화가 매우 시급하다.

(4) 직업교육

37. 직업교육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경쟁에서 탈락된 아이들의 집합소처럼 되어 버렸다. 실험실습교육은 현 정보사회에 적응하기에 이미 낡은 교육내용과 시설이 대부분이다. 농고의 경우 학생들의 노동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매수한후 그 수익금을 교

육청에서 학교별로 실적에 따라 학교예산에 배정시키고 있다. 결국 학생들의 실습은 단순 사역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산업기술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고는 12개월, 상고는 6개월) 교육은 명목뿐이고 실습생들을 장기간 저임금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나. 교육예산

38. 한국의 국민총생산 대 교육예산은 3.6%이다. 이는 이디오피아 4.8%, 프랑스 5.5%, 서독 4.1%, 일본 4.7%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1994년의 교육예산의 증가율도 일반예산의 증가율 13.7%에 못미치는 12.7%만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낮은 교육예산은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가중시켜 1년 사교육비가 무려 17조원으로 가계지출의 30%나 되어 빈부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4).

제2절 교육의 목표

39. 한국에서 입시만을 위한 주입식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개성과 창조성을 말살시키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여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학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1995. 5. 31 발표된 교육개혁안대로 하루빨리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권고>

1)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불합리한 입시제도에서 비롯된다. 1995. 5. 31에 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안 대로 입시제도를 외형적으로 바꿀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의 공약대로 교육재정의 GNP 5%선을 확보해야 한다.

3)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과다한 수업일수와 잡무에서 해방되어야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4)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5) 징계를 받은 학생을 위하여 각 학교 별로 혹은 지역 별로 지도, 상담,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처벌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타당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조약 17, 31조)

40.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때문에 아동들의 여가,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학원이나 과외 출석에 아동들의 방과후 시간의 대부분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지역 국민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95년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외나 학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79.6%였다. 부모님이 허락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놀고 싶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났다. 또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시험성적이라는 대답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는 하기 싫은 공부와 성적에 대한 억압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억압은 중, 고등학생에게는 정서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중, 고생 44%가 시험불안증과 정신혼란의 증상을 경험했다고 한다(청소년대화의 팡장 조사, 1993. 11.).

<권고>

정부는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들이 여가,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41. 아동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과 농촌, 어촌 지역의 아동들은 문화활동과 놀이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다. 도시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공부방에 나오는 940명의 아동중 음악, 미술교육을 개인적으로 받는 아동은 한명도 없으며, 부모와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 연주회, 연극, 오페라, 인형극 등 각종 공연 예술을 관람한 경험이 거의 없다. 14세 이상 아동들은 주로 노래방, 커피전문점, 카페, 락카페, 소주방, 비디오방, 만화방, 당구장에 출입하고 있다. (서울 Y.W.C.A.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1999. 8. 27.).

<권고>

정부보고서가 인정하고 있듯이 아동의 문화를 위한 투자는 미미하다. 아동들의 여가,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들의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2. 아동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1990년에 출판된 아동도서는 1억

권이었는데 그중 48%가 참고도서와 만화이다(김선심, 함정인, 한국아동의 현황과 2000년 대를 향한 전망 15쪽). 학교 도서관 설치와 보유도서현황을 보면 초, 중, 고교 총수의 47%(4,893개교)에만 도서관이 있으며, 보유도서는 학생 1명당 3권에 불과하고, 도서관당 학생수는 1,881명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도서관 관련 예산은 교육 총예산(92년도 8조 2000억원)의 0.066%에 불과하다.

43.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텔레비전, 불법 만화, 비디오, 비디오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해악이 심각하다. 서울시내 중, 고교생 대상으로 나타난 음란물 접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학생 중 53%가 컴퓨터를 통하여 그리고 63.6%가 비디오를 통하여 음란물을 경험하였다(김준호, 1994, 10.).

<권고>

유해한 영상매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심의와 규제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모든 영상물의 심의와 규제를 일원화하여 담당하는데, 영상물 심의와 등급의 강화, 유해 영상물의 유통, 제조업자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또 음란물 우편검열 제 도입과 유해도서목록제도 등도 검토,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영상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장 특별보호조치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조약 제 37조, 39조, 40조)

44. 아동의 범죄행위 처리의 핵심은 정부보고서가 기술하고 있는대로 "처벌보다는 교육", 그리고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절차"의 시행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45. 소년사건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위주로 진행되고 구속기간의 장기화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3년 1년간 전국소년비행사건으로 처리된 총 119,286명중 구속되어 일반형사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1,850명이고, 기소된 총인원은 48,078명이다. 이에 비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은 12,365건에 불과하다(대검찰청, 1993, 555-556).

46. 일반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소년은 장기간의 일반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하여 악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1993년도 소년 형사공판사건 인원은 총 23,256명인데 이 중 부정기형 이상의 실형 선고는 4,119명이고, 집행유예판결은 5,734명, 소년부송치결정은 11,037명이다(법원행정처, 1994, 479, 956). 이중 구속사건의 1심평균 처리기간은 합의부사

건은 2.9개월, 단독사건은 2.3개월이 소요된다. 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나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는 각각 806명과 1,543명으로서 그 심리기간은 평균 2.7개월이 소요된다(법원행정처, 1994, 482). 따라서 구속기소된 소년의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제 1회 공판기일까지의 약 30일간의 재판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1심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최장 6개월, 통상적으로는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다. 1심에서 석방되지 않고, 가정법원 송치나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적인 수감생활을 하게된다. 이와같은 장기간의 소년에 대한 교도행정상의 방치로 말미암아 교화보다는 일반성인 형사범들에게 악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특히 형벌위주로 소년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형사범과의 분리문제는 매우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년 형사사건의 심리 분리를 규정한 소년법 제 57조의 규정은 실무상 무시되고 있다. 법원은 소년형사사건의 처리를 분리하여 진행하지 않고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서 위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권고>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의 도입을 <권고>한다.

1) 법원이 검찰대신에 일괄 송치받아 일반형사사건으로 검찰로 송치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법원선의(先議)제를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일반 형사법과의 관계를 차단한다.

2) 소년의 구금장소를 '소년구치소'나 기존의 소년원 등으로 하여 차별화한다.

3)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불공개의 규정을 소년형사사건에서도 그대로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4) 심리기일, 재판기일과 심리의 단기집중화를 통하여 재판의 신속한 운영을 보장한다.

5)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의 기소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년보호사건 처리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6) 소년형사사건 또는 보호사건의 경우 성인형사법에 비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수사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제는 소년형사사건에서도 기소후에만 선임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소년보호사건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가. 경제적 착취(조약 제 32조)

47.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아동 노동의 착취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최소한 5인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와 시간제 임시노동의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고>

아동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경제적 착취를 방지해야 한다.

나. 마약(조약 제 33조)

48. 한국의 경우 청소년의 마약사용은 아직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환각효과가 있는 부탄가스와 본드 등의 유해화학물질의 흡입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권고>

각종 약물들을 청소년들이 쉽게 오·남용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누구나 습관성 의약품을 약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방없이도 그러한 약물을 살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약물과 화학물질을 오·남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치료하고 재활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 성적 착취와 학대(조약 제 19, 34, 36, 39조)

49.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행 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2,262명의 응답 여성 중 146명(6.5%)의 여성이 아동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아동 성폭행사례는 상담건수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75.2%인데, 주변사람이 60.6%, 친인척이 39.4%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5.6%이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아동 성폭력의 실태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성폭력특별법 실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50.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은 스스로 고소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아버지 또는 시설내 아동의 경우는 시설장)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를 인지한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특히 아버지 등 직계존속인 경우 어머니가 대리고소해야 하는데 가정의 파괴를 원치않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어머니의 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법규정 때문에 성폭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의사들이 성폭행피해아동을 진단, 치료하고 있음에도 법적절차의 번거로움에 연루되는 것을 꺼려서 진단서 발급을 회피함으로써 성폭력의 법적 조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권고>

성적학대일이 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는 사례를 접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 협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한다. 성학대와 성폭력을 예방, 발견, 대처하기 위한 민간기관과 공적 기관의 조직과 설립이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프로그램,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예방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51. 정부보고서는 성폭행의 피의자가 된 경우의 조치만 언급하고 있고 성폭행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권고>

아동 피해자, 아동피해자 부모 집단상담, 아동피해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의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운영해야 한다.

52. 성적학대와 성폭력의 경우 결정적 증거는 아동에게 있으나, 아동의 진술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 미만자는 선서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법정의 모든 절차를 견딜 만큼 강하다면 증언할 수는 있지만 그 증언을 채택하는지의 여부는 법정의 권한이라고 규정한다. 아동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반복되는 질문에 반복하는 경우 증거로 충분치 않다고 기각하는 사례가 많다.

<권고>

아동이 적절한 배려와 보호 속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대리인이나 보호자의 입회하에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진술방식도 다양한 배려가 요청된다. 즉 녹음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이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을 되살아나게 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분리하여 진술하게 한다든가 비공개로 진술하게 하는 방식이 그 예가 되겠다.

53.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취업, 유흥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Y.W.C.A. 오락실 실태 및 심의제도에 대한 제언, 1994.
 Y.W.C.A. 청소년유해규제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김준호, 1994, 10
 김선심, 함정인, 「한국어린이의 현황과 2000년대를 향한 전망」
 김원웅, 「교육백서」,
 김주수, 「친족·상속법」, 육법사, 1991
 노혜련 외, 「아동권리국제협약 및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행동계획의 국내이행상황과 당면과제」, 한국사회정보연구원
 대검찰청, 「93년 검찰연감」, 1993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서울: 서울프레스, 1994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3
 박보희, 김선심 편, 「제 1회 아동생존권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보고서」, 1992
 방송개발원 시청자의식조사, 1994
 법무부, 「94년도 법무연감」, 1994
 법원행정처, 「94년 사법연감」, 1994
 보건사회부, 「보육사업확충 내실화방안」, 1994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보고서 5, 1994, 8, 24
 서울시가정복지국, 「보육시설운영개선계획」, 1995
 서울지방변호사회, 1991. 11.7., <새 친족, 상속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새친족·상속법 무엇이 문제인가」, 1991
 유니세프, 「한국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참고자료집」, 1992
 유진식, 「소년법」, 육법사, 1982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서울: 은평천사원출판부, 1994
 이용교 역, 「아동학대연구」, 서울: 다울, 1993
 조선대 김학력 교수팀 조사, 1993, 7.
 차경구 외,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1994
 차경수 외,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1993
 청소년 대화의 광장 조사, 1993, 11.
 최현 외, 「요보호청소년 지원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 1994
 한국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자료집」, 1993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 공동육아연구회
 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스리기선교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ACRP서울평화교육센터
 성폭력상담소
 OMEP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여성단체연합
 얼린글 나눔살터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한국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함께하신 분들>

- 공동대표: 이오덕(교육학자/우리말연구소소장), 이운구(서울평화교육센터 원장 /한국선명회회장), 주정일(아동학자), 한승원(변호사)
 실무대표: 이기범(교수, 숙대 교육학과/공동육아연구회)
 실무간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집필 및 감수: 노혜련(교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이용교(한국청소년개발원), 안창도(교육민회), 장호순(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
 보고서영역: 박태훈, 캐롤라이나 한

■ 기획

어린이집 가을철 식단

오경민 / 영양사

계절이 바뀌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덥던 여름 동안은 입맛도 없고 마땅한 찬거리도 없이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었었는데, 이제 신선한 야채로 입맛을 돋구어 볼 참인가 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와 똑같이 아이들 식단으로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들 쓰셨을 텐데요, 이번 가을철 식단을 활용한 어린이집 식단을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10~12개월 이요식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갯죽	같은 사과	당근죽	빵우유죽	콩죽	고구마오렌
2주	두부달걀찜	으깬 밥과 우유	장국죽	미역죽	흰살생선죽	칼국수
3주	쇠고기무우국과 밥	달걀죽	시금치국	갯죽	감자죽	카스테라와 우유
4주	녹두죽	연두부와 된장국	멸치죽	야채죽	밤암죽	국수장국

3~5세 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오전 간식	두유	우유	같은 사과즙스	우유	두유	요플레
	점심	쌀밥 시금치된장국 김치 호박전 두부조림	쌀밥 육개장 깍두기 콩나물무침	쌀밥 미역국 김치 멸치조림 감자볶음	보리밥 감자국 김치 복어조림 시금치무침	수수밥 김치콩나물밥 깍두기 콩치구이 고구마줄기볶 음	쌀밥 배추국 김치 우영조림 달걀볶음
	오후 간식	감자전	떡볶이	참쌀경단, 식혜	편육수수, 주스	과일샐러드	고구마맛탕
2주	오전 간식	우유	두유	요플레	두유	같은 사과즙스	흰죽
	점심	쌀밥 오징어국 김치 연근조림 느타리버섯볶 음	강남콩밥 마른새우미역 국 깍두기 복어채무침 무우조림	볶음밥 달걀국 총각김치 도라지무침	밤밥 시금치초개국 김치 애호박볶음 명태찜	보리밥 복어국 총각김치 햇알완자전 미역줄기 볶음	칼국수 김치 감자양파튀김
	오후 간식	떡꼬치	핫케일, 주스	편고구마, 식혜	과일샐러드	참쌀경단, 식혜	햄빵, 주스
3주	오전 간식	우유	요플레	두유	우유	두유	같은 사과즙스
	점심	쌀밥 쇠고기무우국 김치 두부구이 가지무침	쌀밥 감자미역국 총각김치 달걀찜 도토리묵무침	쌀밥 시금치초개국 김치 갈치조림 콩나물무침	보리밥 두부된장찌개 총각김치 감자멸치볶음 오이부추무침	짜장밥 콩나물두부국 김치 무우조림 단무지무침	수수밥 복어국 김치 콩조림 오징어볶음
	오후 간식	화전	야채튀김	떡구이, 감	편고구마	식빵튀김, 사과	밤엿탕
4주	오전 간식	우유	두유	우유	같은 사과즙스	두유	흰죽
	점심	쌀밥 토란국 깍두기 연근조림 고등어튀김	보리밥 콩나물된장국 김치 마른새우볶음 달걀말이	카레밥 무우다시마국 김치 도라지생채	밤밥 홍합미역국 김치 달걀조림 미역줄기볶음	강남콩밥 애호박감자국 총각김치 햇알찜 제육장조림	국수장국 김치 느타리버섯볶 음
	오후 간식	떡볶이	감자전, 배	삶은 달걀, 주스	과전	편 육수수	고구마튀김

좋은 그림책 소개

어린이집 가을철 식단

㊦ 재롱이의 생일날 ㊦

글, 그림 믹 잉크펜 / 이성출판사 / 4,000원

내일은 재롱이의 생일날.

재롱이는 친구들과 생일잔치를 벌이기 위해 초대장을 만듭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일 12시에 생일잔치를 열기로 했어..." 초대장을 달리는 동안 재롱이는 맛있는 생일케익을 만듭니다. 너무 늦어져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재롱이 생일날 재롱이는 바쁘게 초대장을 친구들에게 돌립니다. 친구들을 기다렸지만 12시가 지나도 오지 않아 재롱이는 혼자서 한 입 두 입 케익을 먹다 모두 먹어버리고 식탁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12시 친구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내 생일은 어제였는데.." 친구들은 초대장을 보면서 재롱이 생일이 언제였는지,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지만 재롱이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모인 친구들과 재롱이는 어제 재롱이가 혼자서 다 먹어버린 케익 대신 친구들이 가져온 선물 케익으로 멋진 생일잔치를 합니다.



좋은 그림책 소개

한달, 30일 모두 자기 생일이기를 바라는 아이들이 참 좋아할 그림책입니다. 재롱이의 생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은 곧 아이들의 모습 같습니다. 산뜻하고 선명한 색채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강아지의 캐릭터가 즐거운 생일잔치의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배경그림 대신 흰 여백과 몇 가지 중요한 물건, 그림책에 나오는 강아지의 그림이 등장하는 장면 장면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야기 구성을 갖추고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개념이 사건 실마리이기 때문에 5~6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적당한 그림책입니다. 그러나, 그림으로도 충분히 생일잔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줄여서 읽어주면 원래 내용과 다르지만 또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한번 생일잔치 전에 읽어주세요.



* 그림책 신청은 소식지를 받은 후 15일 안에 해주세요.
다음 소식지 발송때 함께 보내드립니다.

✉ 지탁연 식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이야기, 사랑의 고백

그후, 네번째 여름...

변미양

그해 여름은 많이 외로웠다.

백병원의 신경외과에 입원한 지 5개월. 그 사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내 곁에서 날 지켜주었다. 하지만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난감하게.....

그 당시 나는 무의식적으로 금기시하는 몇 가지가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게 현실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고 직후,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척추와 폐의 수술, 등의 상처와 욕창 등으로 앓을 수 조차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처는 아물어 갔고, 정말 다행히 대소변 훈련도 큰 실수없이 배워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담당 주치의조차 다음의 치료 과정이나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나의 엉덩이 아래 부분부터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오른쪽 다리는 움직여지지 않는데..... 아침마다 다녀가는 의사들의 회진 때에 우리는 그저 아침 인사를 주고 받는 게 고작이었다.

아마도 신경외과 병동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할 치료가 없었나 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얼마 후 담당 과장 의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변미양 씨, 이제 재활의학과로 병동을 옮겨보면 어떨까?"

"....."

"이제 우리 신경외과에서 치료할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끝나가는데..... 뭐 욕창도 다 나아가고, 몸에 끼웠던 소변줄도 빼고 훈련을 하고 있으니 소독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고....."

"....."

"그만하면 처음에 걱정하던 것보단 상태가 많이 좋아진거야, 그렇지?"

걱정하던 것보단 좋아졌지만,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진 못했잖아요.....

입원하고 있는 명동 백병원에는 재활의학과가 없었다. 의사는 성모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쪽을 추천해 주었고, 나는 어디로 가야할 지 내가 갈 곳을 찾아야 했다.

창밖 나무의 짙은 녹음에서도, 문병 온 친구가 사다주는 차가운 팔빙수에서도 여름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게 보이는 건 사고 전날 밤 불던 3월 초순의 썰렁한 바람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난 다시 그 바람 속으로 걸어 나가야 했다.

95년, 이제 네번째 여름을 맞이한다. 지금은 그날의 막막함이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조금은 배웠다. 그래서 이 시대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늘에 살고 있는 나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도 여럿 사귀게 되었고, 조금 더 트인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외침을 나와 내 주변인들에게 더 다짐하게 되었다. 문득문득 부딪치는 세상의 걸림돌-타려는 버스가 그냥 달려가 버린다거나, 빌딩에 자동회전문밖에 없어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두 배 세 배 더 힘이 든다거나 하는-에 눈물이 울컥 솟구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 변미양은 행운아다. 정말 행운아다.

내가 아무리 힘겨울 때라도, 나를 위해 내 몸의 걱정과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이웃들이 있다.

병원에서 맞던 첫번째 여름에도, 몇달간 감지 못한 머리를 시원히 감겨주던 안산지역의 교사들이 있었고, 파란 완두콩으로 예쁜 글씨와 하트를 새겨 넣은 도시락을 싸다준 인천지역의 교사들이 있었고, 답답해 하는 나를 위해 몰래 외출복을 갈아 입히고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빠져 나와서는 영화관에 데려간 봉천·서초지역의 교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네번째 여름에 나는, 지탁연 사무국에서 추진한 수익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교사들이 모아준 '차량구입 후원금'을 받았다. 의사들이 고쳐주지 못한 내 다리를 대신해 건강히 활동할 수 있는 차량을 하루 빨리 구입하라고 마련했다는데...

이 고마움을 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모두들 어려운 형편에서도 모아준 성의를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

고마워요, 모두들!

이나마라도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나의 힘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쓰러지고 슬플 때도 많지만, 금방 일어나고 웃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옆에서 부축해 주기 때문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

변미양 씨는 92년 봄, 해송아기동지의 대표선생님을 맡아 아이들과 생활하시던 중 불의의 사고로 현재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엄청난 일을 겪으셨지만 언제나 웃을 땀 동그런 얼굴로 지탁연 사무국 재경간사이자 편집부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변미양 씨의 밝은 웃음과 건강을 모든 지탁연 식구들을 믿어 기원합니다.

■ 작은 기획

쉽게 배우는 사진, 비디오 교실

김태일 / 「푸른영상」 연출가

사람들은 누구나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담아두기를 원한다.

초창기 인간들은 동굴안에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을 돌에 새겨 놓았을 때부터 자신과 자기 주변의 모습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남아있길 바라는 욕망을 키워왔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짧은 순간을 슬퍼한 탓일까.

단순히 돌에다 각인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다양한 영상들로 변화해갔다.

필름, 비디오, 사진, 레이저 등 각종 영상매체가 등장하여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처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하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영상의 기초는 그림이고 좀 더 발전한 것이 사진, 그 다음 1895년에 영화필름이 탄생했다.

당시 뤼미에르 형제(영화를 만든 최초의 인물)가 '기차의 도착'이라는 2분 정도의 영화를 극장에 상영했을 때 관객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고 한다. 진짜 기차가 오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도망간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알고 보면 쉬운 것이나 모르면 도망을 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도망을 갈 것이나 아니면 앉아서 조용히 감상하며 즐길 것이냐의 문제다. 그리고 영상매체는 무작정 소극적인 수용자 입장에서 이제는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집단의 문제를 표현함으로써 사회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도구로도 쓰이고 있다.

현재 영상으로 담아두는 방법은 점점 발달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담아두는 욕망만 키워왔지 담아두는 매체에 대한 사용은 자꾸만 멀리 하고 편리한 방식을 찾는다.

돈을 들여서라도 비싸고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자동이면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일단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단지 자신의 모습을 담아두는 소극적인 역할의 영상에서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매체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루하겠지만 이 글을 보는 이들이 열심히 읽어 준다면 영상은 새로운 형태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내 얘기를 하나씩 하면서 잘못된 관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사실을 길게 늘어놓았고, 길게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4년전만 해도 '사진은 그냥 찍기만 하면 되지. 뭐 귀찮게 이것저것 알아서 뭐

해'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방송국 작품을 촬영하는 촬영기사에다, 부업으로 결혼식 야외촬영까지 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만큼 사진이나 비디오는 연관성이 많고 기본적인 지식만 익히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시중에 나오는 사진, 비디오에 관한 책자들은 내용이 대개 비슷하다. 대체로 외국 것을 번역하여 팔고 있고 정작 초보자들이 읽기에는 재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여러분은 제일 먼저 전문용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영화나 비디오의 기초는 사진이다. 기능 또한 거의 똑같고 비디오 나름의 몇가지 다른 기능을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여러분이 내 얘기를 들으려면 사진기(수동), 비디오가 있어야겠다. 그래야 얘기를 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비싸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기능을 알고 제대로 써야지, 보통의 경우 잘 안 쓰이는 기능이 많은 사진이나 비디오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적당히 알고 사야 한다.

먼저 구입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국산을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A/S가 되기 때문이다. 외제는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엄청 비싼 경우가 허다한데다가 전문가가 아닌 경우 바가지를 뒤집어 쓸 우려가 많고 가정에서 쓰는 경우 국산과 외제는 큰 차이는 없다. 나의 경우 사진기는 국산 조립품을, 비디오는 외제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디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수리를 맡기면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 그리고 알고 사면 새 것보다 중고도 쓸만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 남대문 지하 수입상가나 세운상가,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살 수 있는데, 대부분 외제를 많이 팔지만 중고도 판매하고 있다. 사진기는 세운상가에서 종로5가쪽으로 조금만 가면 사진기 도매상가가 있는데 이곳에선 국산과 외제, 중고품도 함께 취급하며 값은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 비디오는 악세사리, 배터리, 가방, 삼각대 등 해서 80에서 130만원대까지 있는데 절대 기능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요즈음은 vhs(어깨견착식이고 테이프 종류가 2/1인치)방식에서 8mm 소형 핸디캠 카메라로 바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8mm 경우 카메라에 비디오 기능이 있지만 자주 쓰는 분은 별도의 VTR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촬영도 하고 비디오도 보고 하면 헤드(비디오의 생명으로, 촬영 재생하는 납작하고 둥근 것. 요즘 TV에서 선전하는 다이아몬드헤드라고 하는 것임)에 쉽게 마모가 가서 화질이 안 좋아지는 탓이다. 8mm 가정용 카메라의 경우 외국에서는 방송용으로 쓰이고 있다(미국 케이블TV, 일본).

8mm에는 8mm와 HI 8mm가 있는데 HI8은 고화질과 고음질을 내므로 그냥 8mm보다 기능이 좋고 비싸다. 그러나 가정에서 쓸 경우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진기는 수동, 자동이 되는 카메라의 경우 최저 60만원이 넘는데 요즈음은 수동과 자동이 되는 카메라가 쓰기 편하고 가능한 중고 카메라도 쓸만하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동카메라를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은 일제 카메라를 조립한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다.

※ 작은기획 「자연과 어선어」 속 마치고 이번호부터 「사진, 비디오교실」로 마련합니다.

■ 글마당

탁 아 소 별 곡

「햇살어린이집」편

이야기 하나 - 내가 죽으면...

드 리 : 은실아! 코코봉적 하나만 주나.

은 실 : 싫어.

드 리 : 이잉~ 은실아! 하나만 주나.

은 실 : (소리 지르면서) 싫어! 너 죽을래?

드 리 : 아앙!(울음을 터뜨리며 애절한 목소리로) 내가 죽으면 소식지 복사는 누가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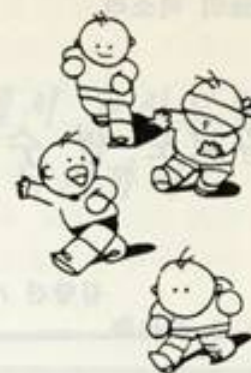
드리네는 덕성여대 앞에서 복사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햇살어린이집의 소식지는 드리네에서 해주고 있다.

이야기 둘 - 복사와 커피

선생님 : (뽀루퉁한 입을 내밀면서 들어오는 드리에게) 얼마큼 같이 왔어?

아빠는 집에서 복사하시니?

드 리 : (손톱을 깨물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아니요, 카피요.



이야기 셋 - 맛있는 범진이

선생님 : (친구들 놀이감을 빼앗은 범진이를 보며) 애들아 친구 놀이감을 빼앗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선생님은 속상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이들 : 냉장고 앞에 '손 머리' 하라고 해요.

매매로 때려주세요.

흔내쳐요.... 등등

드 리 : 선생님 살아 먹어요(범진이 별명은 감자).

하기아 살아 먹어도 맛도 없겠다, 재는 못생겼으니까!

이야기 넷 - 은지는 지킬박사, 똥지는 하이드?!

선생님이 오줌통을 비우고 있는 사이 아앙~! 하는 울음소리

선생님 : 애들아, 누가 싸우니?

범 진 : (씩씩거리며 뛰어와서는) 은지하고 똥지하고요.

선생님 : ??? (똥지는 은지의 별명인데?)



■ 우리들의 목소리

길고도 먼 수련회

김향진 / 주장어린이집

"재호야!"

"어머 선생님, 어디 가세요?"

"에, 교사연수가 있어서요."

"그러세요. 저희는 재호 외가가 육지도(편집자주: 전라도 소재)에 있어서 잠시 다니러 가요."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네요. 재밌게 보내고 오세요. 재호야! 선생님 재밌는 것 많이 배워 올께. 재호도 잘 잤다와."

"안녕."

"편생님 안녕."

새벽 안개속에 두 아이를 데리고 피서를 가는 어린이집 자모를 보내고, 난 아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벽 5시 30분 설렘 속에 경기도 흥원연수원을 향해 떠났다.

연수 장소로 가는 버스속에서는 처음으로 한대의 차 속에 부산에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 몸을 섞다보니 처음 연수를 참석하는 듯 모두 알찬 연수를 기대하며 약간의 긴장감까지 감돌았다.

김밥도 먹고 우동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고..

한참을 떠들다 보니 어느새 커다란 현수막, 아담하고 나무로 싸인 연수원 건물이 연수에 참석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기사님의 10시간이 넘는 버스 미로게임 때문에 첫번째 프로그램은 끝났고 두번째 프로그램도 반이 넘게 진행되고 있었다.

순간 버스에서 내린 원장님, 교사들은 "어머"하며 소리를 지르며 접수를 마친 뒤 우르르...

둘째날 오전 9시 30분.

첫 프로그램으로 소그룹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첫날의 아쉬움 때문인지 교사들은 서두르는 모습이고 난 부산에서 국악소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 동화, 국악교육의 소그룹 중 고민없이 국악교육에 참가했다.

다소 햇볕은 따가웠지만 넓은 연수원들에 장구채 1벌을 들고 모여보니 우리 선생님들의 국악교육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전국의 선생님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에 약간의 동질감과 위안까지 얻었다.

강의가 시작되면서.

강사는 신을 벗고 잔디에 서서 자연을 느끼라고 했다. 까칠하면서도 폭신한 잔디와 짙은 나뭇잎에 붙은 매미들의 합성, 강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머리칼을 날리는 바람, 파란 하늘까지.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연 속의 민족정기를 불러 넣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잔디에서 맨발로 뛰어보고 의식하지 않고 손을 치켜들고 호흡을 해보고 굴실 굴실 굴신으로 굳어진 몸도 풀어보고 그

리고 있는 힘을 다해 "덩기덕 덕 더러러리"

세시간이 넘는 열강 속에 우리 민족의 정서와 기를 체험하며 하나가 되보고 저도모르게 덩실덩실, 흥을 느꼈다.

아! 그래, 이거구나.

굿거리, 휘모리를 외우게 하는게 아니구나. 아이들의 굳어지고 뻣뻣해진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자연으로 돌아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런 흥을 느끼게 하는거구나.

이제 연수는 끝났고 돌아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것을 왜 우리가 이타지도 어렵게 배워야 하는지.

주위를 돌아보면 몸조차도 온전한 우리의 것이 없는 성 싶다.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비디오에 랩송에 외제상품에 "그래 우리 아이로 키워야 해."

그렇다면 우선 "궁파 궁파"

이번 연수는 여러가지 기대도 컸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을 하는 국악프로그램이 있어 다른 어떤 연수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이 일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준 것 같아 기뻐다.

힘들고 먼 여행이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번 토요일에는 국악강습소라도 다녀와야겠다.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데리고.

※ 바로 잡습니다.

글쓴이가 '수련회'라고 칭한 부분을 공식 명칭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에 따라 '연수'라고 바로 잡습니다.

캠핑에서 교사모임이 되기까지

배미정 / 7몸놀이방

계절의 변화만큼 신선한 느낌이 있을까?

엇그제만 해도 뜨거운 열기 때문에 하늘 한번 제대로 올려다 볼 수가 없었는데 어느새 하늘은 사람들의눈길이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높다랗게 올라가 파란 얼굴로 내려다 보고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계절이 바뀌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아쉬워들 한다는데 우리 광주지역 교사들에겐 올 여름은 누구에게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4월에 창립된 민보련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광복위 소속 보육시설만 참가했던 캠프를 민보련 차원에서 준비하여 그 참가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번 캠프중 가장 좋았던 것 하나가 우리가 일일이 프로그램에서 소품까지 준비했었던 번거로움에서 탈피하여 프로그램과 진행을 함께 해주는 이벤트사에 행사를 맡겼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교사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아이들과 부대끼며 함께 한다는 것도 소중한 것이기에 이번 이벤트사의 참여는 단점도 있지만,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여유

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10여 곳에서 모여든 호기심 가득한 130여 명 아이들의 생기있는 눈동자와 교사들의 잔뜩 흥분된 얼굴은 캐빈(이벤트사의 프로그램 진행자)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기어 오르고, 뛰고, 칠하고, 악기를 두드리면서 맘껏 모처럼의 바깥놀이를 즐겼다.

낮에는 지칠 줄 모르고 뛰어놀던 우리 아이들은 행사의 최고봉인 장작놀이와 폭죽 터트리기를 하는 동안 웬일인지 선생님의 다리와 옷자락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피성을 지르고 우는 것이다. 아마 폭죽소리에 놀랐나 보다. 교사들은 그 분위기에 흠뻑 젖고 싶어 아이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이미 겁에 질린 아이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이내 잠이 들었다. 간혹 엄마 아빠를 찾으며 잠 못드는 아이도 있어 밤새 엄마 아빠 노릇을 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다른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들도 아이들을 재우고 한 곳에 모여보자는 말에 하나 둘 불기만이 남아 있는 운동장에 모였다.

간단히 자기 소개와 여름 공동캠프에 대한 자기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사이 여름밤은 깊어만 갔다.

다음날은 전날의 놀이에 지쳐 프로그램을 거의 무시하고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들게 했다. 이렇게 반나절을 보내고 점심을 먹기 전에 집을 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엔 우릴 마중나온 차에 아이들을 정신없이 태우느라 잘 가라는 인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캠프장을 떠났다.

이렇게 1박2일의 95년 여름캠프가 끝난 것이다.

정신없이 끝나버린 여름캠프는 그것으로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후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에서 캠프에 참가했던 교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교사모임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교사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마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사들을 보면서 그동안 조심스럽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부분이 쉽게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저 생각에만 머물러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제는 제기된 교사모임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고 아직은 교사모임을 위한 준비단계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단순히 아이들을 주어진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이 아닌, 보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주체로서 고민하는 교사모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이다.

셋터, 그리고 우리

김은정 / 동덕여대 아동학과 소모임 '콩콩' 어린이사랑방 자원활동가

지택연 합숙을 생각할 때면 항상 설레임이 있다. 우리 손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그러면서 반복되는 실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이 지택연 합숙이다. 이번 여름 합숙도 예외는 아니다. 합숙을 위해 준비모임을 갖고 어설프지만 우리의 힘으로 진행되었다.

드디어 셋터로 떠나는 날, 우리는 시

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친구들로 발을 구르고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끝내는 청량리에 모였던 4학교만이 출발하게 되었다. 황미혜 간사님까지 10명의 우리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또 갈아타고 걸어서 셋터에 도착했다. 기차길을 건너 포장된 도로를 걸어 내려가 민박집을 잡았다. 버서가 없던 우리에게 성복이와 준호의 힘으로 민박집 아줌마는 버서도 빌려주시고 방값도 깎아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성복이와 준호는 자기 학교에서 홀로 와서 친구 없다는 면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우리들은 우선 먹고 보자 해서 윤희의 요리솜씨 덕분에 밥을 빠른 시간내에 먹을 수 있었다. 밥은 나의 부주의로 거의 태웠지만 그래도 찌개는 맛이 있었다. 밥을 태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얼마나 구박 받았는지 합숙에 온 사람이면 다 알 것이다.

우리는 밥을 먹고 조금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곤 계속 일정대로 진행시켜갔다. 아동의 미술교육, 게임, 민족교육에 대해 우리는 준비한 것을 발표하고 토의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게임도 했다. 특히 국민대에서 혼자 참석한 준호가 준비해온 게임과 그 자료집은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게임들을 우리는 어린애들처럼 신나게 하면서 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자리에서 돌기를 하다 머리를 벽에 부딪힌 귀여운 여학생(송숙인?)도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술로 조금씩은 흥분한 모습으로 평상에 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수박을 2통이나 사갔는데 너무나 익어서 먹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 수박도 내가 골랐다는 이유로(사실은 내

가 고른 수박에 사람들은 동의했었다) 무지하게 구박을 당했었다. 그래도 그 수박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정희언니가 없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찾은 언니, 세상에 퍼세식 화장실에서 위태롭게 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후배로서 선배에게 못할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웃음을 선사했기에 쓰려고 한다. 화장실에서 언니를 구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언니의 신발 한 짝이 그 속으로 빠진 것이 문제였다. 언니는 취기로 잠이 들었지만 우리는 도대체 언니가 내일 집에 갈 수 있는가를 걱정했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뒤로 하고 언니는 다음날 아침 기다란 막대로 과감히 그 신발을 건져서 수돗가에서 얼마동안을 씻은 뒤 본래 신발의 모습으로 돌려놓았다.

그때 우리들은 기쁨 반, 놀라움 반으로 언니를 볼 수박에 앉았다.

1박 2일의 일정을 너무나 아쉬워하며 우리는 셋터를 떠나왔고 다음엔 제발 4학교만 가지말도 더 모아서 가자고 다짐을 하며 간단한 뒷풀이 후 집으로 향했다(집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참석했던 우리만의 추억으로 남기련다).

이번 여름 합숙은 끝났지만 다음 합숙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설렌다.



■ 건강하게 삽시다

이와 잇몸의 병을 예방하려면

김철환 / 인제대 부속 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와 잇몸질환은 우리를 매우 자주 불편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염(풍치)을 비롯하여 치과질환 대부분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만 실행된다면 치과질환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킨다면 대부분의 치과질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식후에 이를 닦고, 특히 잠 자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는다.
- 2) 이를 닦을 때는 회전법으로 하루 3회, 한번 닦을 때 3분 이상 닦는다.
- 3) 단 음식과 탄산음료는 피하고, 우유보다는 모유를 먹인다. 또 인스턴트식품처럼 잘 가공된 음식보다는 가능한한 덜 가공되고, 덜 조리된 음식을 먹는다.
- 4) 어릴 때부터 잇솔질 교육과 음식물 섭취에 대한 교육을 한다.
- 5) 만 6세 이후 처음 나오는 영구치는 치아우식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 4개의 영구치에 대해서는 치면열구전색과 같이 이의 골짜기를 줄여주는 처치를 받는다.
- 6) 년1회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
- 7) 임신전 치과질환 예방을 위해 치석제거를 받는다.
- 8)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와 잇몸질환에 잘 걸리므로 주의를 요하며, 자주 치과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은 방법을 생활화해서 건강한 이와 잇몸을 가집시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히 치과의사와 친해져야 합니다. 아니면 술은 적당히 마시고, 담배는 아예 끊고 필요없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병은 생긴 후에 돈과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 고생하지 말고 미리 예방해야 하겠지요?

◁치과 검진을 자주 받아야 하는 사람▷

- 음주자 • 흡연자 • 약물복용자
- 당뇨병, 구강건조증(Xerostomia) 등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 보육계 풍향

가을이 되니까 각 단체별로 행사, 강좌 등의 활동이 풍부하고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육계풍향에서는 각 단체별 사업을 소개합니다.

공동육아연구회(전화: 522-3851)

공동육아연구회에서는 공동육아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역량있는 교사와 부모를 교육하기 위한 강좌로 공동육아 현장학교를 마련한다. 현장학교는 기초과정, 전문과정, 어머니학교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과정별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초과정 4기>

대 상 : 공동육아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기 간 : 1995년 9월 12일 개강(12주) 매주 화요일 7:30 - 10:00

인 원 : 30 - 35명

회 비 : 10만원

주	강좌내용	강사
1	현장학교 문을 엽니다! - 강좌, 강사 및 수강생 소개 함께 크는 우리 아이 - 공동육아와 통합교육	이기범 / 공동육아 현장학교 교장, 숙대 교육학과 교수
2	바람직한 공동육아 그 이념과 방법 - 우리 어린이집 소개	정병호 / 한양대 인류학과 교수
3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전래놀이 배우기	김영주 / 놀이연구회 '놀이' 유아분과장
4	그림책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 - 유아 독서 지도	조준영 / 파란나라 대표,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5	국악과 친해지려면? - 몸으로 느끼는 우리 가락	임수정 / 국악인
6	아이가 그리는 세상 - 아동 미술의 이해	정승각 / 화가
7	생활 속의 연극, 연극 속의 생활 - 연극의 교육적 활용	김석만 / 한국 종합예술학교 연극과 교수
8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기 - 성 고정관념 깨기	김정희 / 서강대 여성학 강사
9	영유아기의 문제행동과 지도 - 아이들의 심리와 행동의 이해	신철희 / 원광 아동상담센터 원장
10	아이들의 몸 살리기 - 몸으로 표현하는 마음	이영란 / 연극인
11	오늘의 우리는... - 공동 생활과 일과	패널토의 / 어린이집 교사
12	현장을 향하여!	연수회

<전문과정>

기 간 : 15주

인 원 : 각 반 15명

회 비 : 20만원(현장학교 기초과정 수료자는 18만원)

■ 국악반

강사 : 임수정 선생님(동양음악연구소 연구원, 국가 지정 중용무형문화재 제 97호 전수자)

시간 : 매주 월요일 7:30 - 10:00

개강 : 9월 11일(월)

내용 : 기존에 따로 따로 강습되었던 풍물, 민요, 춤을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직접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

■ 특수교육반

강사 : 김희수 선생님(미국 일리노이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장애아 통합교육/인턴과정 수료)

시간 : 매주 금요일 7:30 - 10:00

개강 : 9월 15일(금)

내용 : 신체,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원하는 교사들을 위한 강좌.

■ 교육 SLIDE반

강사 : 조준영 선생님(파란나라 대표)

시간 : 매주 수요일 7:30 - 10:00

개강 : 9월 13일(수)

내용 : 아동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내용(그림책, 아이들의 일과 등)을 선정하여 SLIDE로 만드는 전 과정

■ 미술반

강사 : 신현경 선생님(미네소타대학원 미술교육, 미술학 전공, 계원 종합예술학교 강사)

시간 : 매주 목요일 7:30 - 10:00

개강 : 9월 14일(목)

내용 : 인간적인 삶(창조적인 인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아이들 개개인 중심의 미술교육.

<공동육아 어머니 학교>

기 간 : 8주

시 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12:00

개 강 : 1995년 9월 11일(월)

인 원 : 20명

수강료 : 6만원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269-2962~4)

(사)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미혼남녀교육과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1기 미혼남녀교육 - 남녀가 함께 배우는 성과 사랑>

기 간 : 1995.9.21 - 10.13(6회 강좌)

시 간 : 매주 목, 금 오후 7:30 - 9:30

장 소 : 종로성당 교육관 3층 (종로4가 세운상가 앞 / Tel. 765-6101)

수 강 료 : 3만원(남녀 한쌍은 5만원)

접 수 : 9월 19일까지 선착순

문 의 : 한국여성의 전화 (Tel. 269-2962/4) 안은지 간사

등 록 : 서울은행 29501-2095905 한국여성의 전화로 입금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후속활동 : 교육을 마친 후 원하시는 분은 상담원 교육을 받고 상담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내용의 소모임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 육 일 정

날 짜	강 의	강 사
9/21(목)	여성상위시대라면서요? - 여성문제의 이해	정 유 성 (연세대 강사)
9/22(금)	컴플렉스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 남성컴플렉스, 여성컴플렉스	김 관 호 (연세대 강사)
9/28(목)	나도 야한 남자가 좋다! - 일그러진 성, 바로보는 성	구 성 애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부원장)
9/29(금)	학교에선 안 가르쳐주지?! - 함께 배우는 성과 사랑	장 정 순 (인하대 강사)
10/12(목)	테스에서 우조교까지 - 성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신 혜 수 (한일신학대학교수 / 본 회 회장)
10/13(금)	이 시대의 사람법	오 숙 희 (여성학자 / 방송인)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25기 여성상담원 교육>

기 간 : 1995.9.12(화)~1995.11.14(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 소 : 서울 중구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강당

대 상 : 여성문제와 상담에 관심있는 여성

등 록 : 8.16~ 선착순 50명. 전화 혹은 방문

수강료 : 8만원(서울은행 29501-2095905 한국여성의 전화)

문 의 : 한국여성의 전화 교육부 Tel 269-2962~4

* 본 교육을 수료하신 후 후속교육을 받고 본 회 상담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후속교육 내용 - 전화상담론, 상담사례연구, 상담참관 및 실습

여성상담원 교육일정

회수	날 짜	주 제	강 사
1	9.12 화 10:00~12:30	개강식/오리엔테이션 여성의 거울보기	박해란 (이화여대 강사)
2	9.14 목	한국사회와 여성	지은희 (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3	9.19 화	여성문화, 남성문화 다른가 같은가?	구훈모 (세종대 강사)
4	9.21 목	대중매체와 여성	조성숙 (상명여대 강사)
5	9.26 화	건강한 성과 사랑	박해경 (경희대 강사)
6	9.28 목	여성과 가족	장정순 (인하대 강사)
7	10. 5 목	시청각 교육	본 회 강사
8	10.10 화	부부갈등, 그 원인과 해결	이현숙 (한신대 강사)
9	10.12 목	상담이란 무엇인가?	김명순 (서강대 강사)
10	10.17 화	여성폭력의 현주소	한우섭 (본회 이사)
11	10.19 목	학대받는 여성, 학대하는 남성의 심리와 행동	김명희 (본회운영 센터 전문상담원)
12	10.24 화	성격차이, 성, 알콜, 의처증, 외도 - 그 원인과 치료	정수경 (태화사회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13	10.26 목 오후 4시~6시	임신, 피임, 낙태, 강간피해자 의 료대처	윤경 (산부인과 전문의)
14	10.31 화	법과 여성	양정숙 (변호사)
15	11. 2 목	위기상담의 역할과 유의점	윤종모 (성공회대 교수)
16	11. 7 화	여성상담이란 무엇인가?	문은희 (연세대 강사)
17	11.10금~11토	숙박교육 -인간관계훈련 -한국여성의 전화와 여성운동	정영애 (본회 교육조직국장) 손덕수 (본회 이사, 효성여대 교수)
18	11.14 화 10:30~13:00	현대인의 삶에서 자원활동의 의의 수료식	이문우(본회 이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교육시간은 위에 표기된 날 외에는 모두 오전 10시 30분 ~12시 30분 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기 공개강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는 인권의식의 확대와 실천을 위해 인권교육 2기 공개강좌를 마련한다.

기 간 : 1995. 9. 16-12. 16(12주)

장 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

대 상 :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이

수강료 : 전 강좌 3만원, 1강좌당 5천원

문 의 : 715-9185(담당 김수경)

인권운동사랑방 2기 공개강좌 시간표(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일 시	강 의 내 용	강 사
9월 16일	세계의 사형제도 - 사형제도의 역사, 현황,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위원장)
9월 23일	장애인의 고용문제와 현황 - 연계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9월 30일	아내구타, 성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여성문제 - 그 실태와 대안	한국여성의 전화
10월 7일	북경여성대회 보고 및 평가	이상덕(한국NGO위원회 총무)
10월 21일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하종강(한올노동상담소 소장)
10월 28일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각론)	하종강
11월 4일	동성애의 인권 -동성애란? / 동성애의 실태, 그리고 인권문제	서동진([친구사이] 회장)
11월 11일	여성관련 국제조약 -국내법과의 관계 / 그 이용방법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12월 2일	보안관찰법	미정
12월 9일	행려자의 인권문제	미정
12월 16일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미정

참여연대 1주년 기념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서는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마련한다.

일 시 : 1995년 9월 16일(토) 오후 2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제1부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참여민주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 한국의 시민사회, 시민, 사회운동 -

제2부 창립 1주년 기념식

제3부 친교의 시간

인천여성노동자회(032-863-2659)

<사랑의 수화교실>

일 시 : 95.9.20 - 11.15(3개월) 매주 수요일 7:30

강습료 : 40,000원(수료증 수여)

강 사 : 한국농아복지회 인천광역시지부

<부모역할훈련(P·E·T)>

일 시 : 95.9.18 - 11.6(8회) 매주 월요일 10:00

강습료 : 50,000원(수료증 수여)

강 사 :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박광석

한국가족치료연구소 교육프로그램

<부모소양훈련교육>

일 시 : 95년 9월 16일 ~ 11월 4일(8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11:30

<전문가를 위한 임상사회사업교육>

일 시 : 95년 8월 26일 ~ 10월 21일(8회) 매주 토요일 오후 3:00 - 4:30

강 사 : 임종렬 박사

문 의 : 한국가족치료연구소(3452-4591)

치료 레크리에이션 무료공개강좌

일 시 : 9월 11일(월) 19시

장 소 : 한국 치료 레크리에이션 협회 강당(사당동 소재)

대 상 : 치료 레크리에이션에 관심있는 분

문 의 : 한국 치료 레크리에이션 협회(525-5596, 522-9763)

재활용 센터 운영

일 시 : 매월 2,4주 금요일 10:00-12:00

내 용 : 신문지 4kg -> 저공해비누 1장

우유팩 3kg -> 휴지 1개

잡지류(책 포함) -> 저공해비누 1장

장 소 : 본동종합사회복지관(817-8052~4)

■ 소식과 소식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주최하고 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기획, 주관한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가 550여 명의 예상 외의 많은 보육시설 원장, 보육교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무사히 끝났다.

이번 연수는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연수로써 기획되어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 타연수와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수 강연으로는 주제강연, 기획강연, 분반프로그램 등의 기획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환경구성워크샵', '아동문제행동 유형 및 지도', '국악교육', '영아교육', '동화 및 이야기 나누기' 등의 교육과 '비용강좌', '교사 친교의 밤'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주)엘지전자, 교재교구 프뢰벨과 (주)태평양에서 협찬하였다.

[지방자치시대 환경, 보건, 복지 정책 워크샵]

9월 1일(금) 삼성화재빌딩 3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앙일보사의 후원으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초청 [지방자치시대 환경, 보건, 복지 정책워크샵]'에 본 연합회 최현숙 회장이 패널토이자로 참석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와 보육사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번 정책워크샵은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공동주관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과 건강 연구회 등의 9단체에서 공동주최한 것으로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150명 가량이 참석하였

다.

이날 다뤄진 주제발표는 [지방자치시대 지역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이치범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방자치 시대를 보건복지의 시대로(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 정책과제(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변미양 씨, 구로어린이집 기금 전달식 진행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던 변미양 씨 기금건이 마무리되어 드디어 9월 6일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금은 변미양 씨의 보다 원활한 활동들을 위하여 승용차 구입비를 모금하기로 하고 연합회 사무국 차원에서 '이실삼전대보탕'을 판매하여 마련한 것이며, 지역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250만원이 모아졌다. 승용차 구입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지만 변미양 씨 물의 일부로 제 몫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이날 5월 30일자로 폐원되었던 구로어린이집의 시설정리기금이 구로어린이집의 내부원칙에 따라 지탁연에 기금으로 전달되는 것을 함께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전 구로어린이집 원장 박상희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정희연 부회장 영국행 연수 떠나

그동안 본회의 부회장으로, 아이사랑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부천지역 대표로 활약을 해오던 정희연씨가 보육활동과 관련된 연수를 받게 되어 9월 2일 오후 2시 영국행 비행기로 출국하였다.

이 연수는 1년 예정으로 보육사업과 관련된 교육이론과 현장견학 등의 내용으로 영국현지의 보육사업을 면밀히 지켜볼 수 있도록

진행되며 따라서 정회원 부회장은 내년 하반기 경에 입국하게 된다.

구체적인 연수과정과 생활에 대해서는 정회원 부회장과 연락이 닿는대로 본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합숙

8월 11(금) - 12일(토) 이틀간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합숙이 셋터에서 있었다.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학교 중 내 학교 총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원활동가들이 준비한 교육을 중심으로 아동교육(미술, 율동, 게임)과 민족교육,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사 람 들

* 출산하셨습니다.

김명숙 씨(이깨동무어린이집)가 무더운 날 씨에도 불구하고(?) 4.5kg의 건장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편집부원이 새로 보강되었습니다.

정회원 부회장이 영국연수를 떠나면서 비어있게 된 자리를 두분의 새로운 편집부원이 메꿔주시게 되었습니다.

한분은 박정애 씨(오손도손애기방 전직교사)이구요, 또 한분은 멀리 부산에서 부터 서울로 와계신 강애란 씨(우리아가동산 전직교사)입니다.

이 두분과는 10월호부터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10월호를 기대해주세요.

연 합 회 일 지

- 8 / 1 - 4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 11-12 서경지역 자원활동가 합숙
- 23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평가모임
- 24 집행회의
-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 27 자활회의
- 29 지방지대의
- 29-30 서울시의회 복지소위원회 간담회
- 31 집행위 합석
- 정회원 부회장 송별식
- 9 / 1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건·복지정책 워크샵(최현숙 회장 패널리스트로 참석)
- 2 정회원 부회장 출국
- 5 편집회의
- 6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 벼룩시장

* 벼룩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일이나 함께 하고 싶은 모임, 물론 교환 등 여러분의 각종 정보를 본당과 내용에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시고 자 하는 본은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구합니다. 본 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활기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찬 교사를 구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아끼는 게 별건가요? 농촌에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재정이 안정되면 그것도 농촌을 지키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첫술 언제요? 농촌탁아소 재정마련을 위한 첫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장에, 가격은 한세트(4개입)에 2,500원입니다. 대금미납하신 분들은 속히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좀 바칩시다! 통째로 지략연이 10살이 되었습니다. 11월 19일이 지략연 10주년 기념행사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원분들은 아마 없겠지요? 지략연의 10주년을 기념할 여러분의 거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번뜩이는 지략연 지략연에 대한 애정으로 멋진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지략연 1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지역보육운동, 아직도 못보셨어요? 일본 보육운동의 산 증인 스즈키 쇼조 선생님의 교육관을 높이, 가정, 지역, 인권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필독서! 더 늦기 전에 구입하세요. 문의는 안함회로. 판매가 : 5,000원
꺼리 모음, 글 모음 "우리네 아이들"을 재워줄 귀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보고 느끼신 거나 보육활동을 하면서 제기되는 생각들, 기타 모든 내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직접 글로 써주시면 더없이 고맙지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그림책 우편판매!! "우리네 아이들"에서 소개되는 좋은 그림책을 판매합니다. 판매가는 할인되지 않지만, 회원들(자료회원 포함)께는 무료배송을 해드립니다. 7.8월호 소개책자: 기타 이전에 소식지에서 소개되었던 그림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오윤정 교육부장
서울 자활대표자회의 때 : 1995. 9. 26(화) 오후 6시 곳 : 해화동 명동다방(상대입구) 안건 : 하반기 사업계획 한군데도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보육사업 하려면 이 책들은 있어야...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할인판매 아동보육사업의 경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 체계적으로 수록한 [영유아총서 :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이석무 저, 해화당, 장가 11,000원)]을 정가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희망자는 본 연합회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구입을 하면 됩니다. 판매가 : 10,000원(외부) 9,000원(내부, 자료회원)

■ 편집부에서

★ 9월호부터 발행되는 날짜가 바뀝니다.

다른 잡지들은 월초에 나오는데 [우리네 아이들]은 월말에서야 받아보려니까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죠?

여러분의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해 9월호부터는 발간시기를 옮겨 여러분께 보다 빨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받아보시는 회원 여러분의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이는 [우리네 아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탁아'라는 말이 공식용어가 아님으로 인해 '보육'으로 바뀌 편집합니다. 따라서 내용에 별 무리가 없는 이상 '탁아'라는 용어는 '보육'으로 바로 잡습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1 년 : 최진호, 정정숙, 황병순 님의 [우리네 아이들] 구독료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내용을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회원이 언니가 드디어 떠났다.

영국으로

빈 만큼 다시 채워지는 걸까.

차고 넘쳐질까.

새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9월이고 싶다.

- 혜민

★ 아~ 가을인가.

갈 사람(회원언니)은 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 빈 자리를 채우기에 바쁘다.

- 미양

★ 마음 먹었던 것보다 여러분을 빨리 찾아 뵙 수 없어 죄송한 마음으로 9월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약간의 숨을 돌려봅니다.

편집후기를 쓰다보니 有口無言이라는 네 글자를 유난히 편집후기에 많이 썼던 회원언니가 생각나는군요.

- 미혜

문 주석연 비가 온다면서요?

가운데 물수를 이겨낸 친지 여러분과

즐겁고 풍성한 마을의 한가위를 독자

여러분 가슴 한 가운데에 묻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 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자/억/사/외/탁/악/△/연/업/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묶은이: 변미양, 주혜민, 황미혜
펴낸날: 1995년 9월 12일

판매가 : 3,000원